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업 운영매뉴얼

## [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 [주요저서]

아동보호 수행체계 개편 및 교육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복지학회, 2020(공저)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개선방안 연구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0

## [공동연구진]

배화옥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아리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본 매뉴얼은 세이브더칠드런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매뉴얼 적용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매뉴얼 적용 지원사업 운영 시 본 매뉴얼과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함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용어 설명	006
-------	-----

<b>1장</b> 센터 개요	제1절 센터의 설립과정 018	018
	제2절 업무수행체계 019	019

<b>2장</b> 센터의 목적 및 설치기준	제1절 센터의 목적 및 근거 028	028
	제2절 시설 기준 031	031
	제3절 종사자 기준 035	035
	제4절 시설설치 및 휴폐업 038	038
	제5절 예산 및 예산운용 039	039
	제6절 필수서류 및 운영위원회 042	042

<b>3장</b> 아동보호와 사례관리	제1절 입소관리 046	046
	제2절 사례관리 063	063
	제3절 양육과 치료관리 069	069
	제4절 퇴소와 사후관리 092	092

<b>4장</b> 비밀보장 및 안전	제1절 비밀보장 098	098
	제2절 CCTV 관리 103	103
	제3절 아동 안전 105	105
	제4절 종사자 안전 115	115
	제5절 질병(감염)으로 인한 위험상황 예방 118	118

<b>5장</b> 종사자 직무	제1절 종사자 교육 122	122
	제2절 수퍼비전 144	144
	제3절 종사자 근무 및 복지 가이드라인 148	148
	제4절 Q&A 157	157

<b>부록</b> 서식	169
--------------	-----

## 용어 설명<sup>1)</sup>

### ☞ 쉼터개요 & 쉼터의 목적 및 설치기준

#### 아동

만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학대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항)

#### 일시보호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

#### 장기보호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곳(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또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

#### 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 원가정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에 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아동복지법 제46조)

#### 보호처분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 분리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일시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을 배치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인데 반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이기는 하지만, 보호기간과 목적이 상이함

1) 본 용어 설명의 일부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참조함.

### 시설보호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형태.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이 있음(아동복지법 제52조)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6항)

### 가정위탁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 가정복귀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 사례종결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쉼터 종사자와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는 것

### 사후관리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

## 아동보호와 사례관리

### 쉼터 사례관리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신 회복과 역량 강화를 기하고, 원가정 복귀 후에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별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적이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배치한 공무원(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4항)

### 입소관리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는데 실시하는 일련의 지원 절차. 입소 전 지원 절차와 입소 후 지원 절차로 구성됨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한 곳임. 주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지원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 7)

### 등교학습 지원

등교학습 지원: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 지원

### 비밀전학

피해아동이 안전유지 등을 이유로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해아동의 전학 관련하여 취학업무 관계자 외에 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전학조치 되는 것을 말함

### 사정

개별 아동의 특성 및 욕구를 사정하는 것

### 사례회의

피해아동에게 보호서비스, 심리정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례관리 단계별로 필수 또는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

### 양육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문화여가지원, 심리상담 치 치료지원 서비스로 구성됨

### 아동참여프로그램

쉼터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진할 때 “아동참여”와 “아동안전보호”라는 두 가지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함

### 전원 조치

피해아동의 보다 더 적절한 보호를 위해 타기관으로부터 입소를 의뢰받거나, 쉼터에서 타기관으로 피해아동의 입소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 상담서비스

피해아동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피해아동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집단상담서비스, 피해아동에게 서비스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하는 기관상담서비스 포함

### 심리검사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놀이치료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

### 미술치료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

### 퇴소관리

학대피해아동이 쉼터로부터 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 절차 관리

### 사례종결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피해아동을 쉼터에서 내보내거나 타기관으로 의뢰하는 등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 사후관리

사례종결 이후 타기관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

## 비밀보장 및 안전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

### 행동강령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 기준

### 성적지향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

###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

### 사건인지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림을 뜻함

### 잠재 위험성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불안정한 행동,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 모니터링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대상의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

### 재발 가능성

특정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

### 타임아웃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중단시키고 조용한 장소에 격리하는 것

### 소진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피로감과 좌절상태

## 종사자 직무

### 시설장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의 장으로서 행정과 자원관리 등 쉼터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 보육사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전담하는 종사자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피해아동의 심리검사와 정서적 치료를 전담하는 종사자(\*통상 치료사라 함)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생존권**

아동의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

**보호권**

아동이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발달권**

아동이 자신의 발달단계와 능력에 따라 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참여권**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비폭력대화**

아동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종사자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

**감정코칭**

아동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며,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방법

**직무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이 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기본교육**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신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이론교육

**의무교육**

신규 기본교육 이후 종사자가 법령과 아동복지사업안내 등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심화교육**

각 쉼터별로 필요한 교육주제를 선정하여 중앙과 지역의 유관기관에서 교육자를 섭외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수퍼비전 기능 병행 가능

**수퍼비전**

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수퍼바이저**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시설장이나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실무자, 아동, 사회복지, 법, 의료 분야의 전문가

**종사자 복지**

쉼터 종사자의 근무제도, 휴가제도, 포상제도로 구분하여 종사자들의 업무향상을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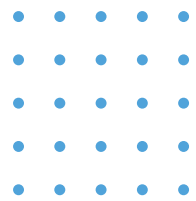


# 1 장

## 쉼터 개요

제1절 쉼터의 설립과정

제2절 업무수행체계



## 제1절

# 쉼터의 설립과정

- 2000**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제45조)
  - 운영예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국비(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 2000 ~ 2015**
  - 격리보호(분리보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일환
  -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
  - 피해아동은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됨
  - 2014년 36개소의 쉼터 운영
  - 공동생활가정은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가됨
- 2016**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법적 시설로 지정됨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2.]

  - 쉼터사업을 국고(복권기금)로 지원 시작. 현재는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
  -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수준을 권고
- 2017**
  - 학대피해아동쉼터 : 총 63개소
- 2021. 3**
  - 학대피해아동쉼터 : 77개소
  -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 2021. 12**
  - 학대피해아동쉼터 : 98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 77개소

## 제2절

# 업무수행체계

### 1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주체 업무 수행체계

학대피해아동 보호관련 주체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학대아동전담공무원),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쉼터 운영 법인 등이 있음. 주요 업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1〉 쉼터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체계

주체	업무역할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대응 정책 수립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총괄</li> <li>• 예산지원 및 실적 총괄 관리 사업 평가</li> <li>•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아동권리보장원 위탁)</li> </ul>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li> <li>•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li> <li>•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li> <li>•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직무교육</li> <li>•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li> </ul>
시·도 (아동학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역 인력배치·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 지원</li> <li>•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리·감독</li> <li>•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li> </ul>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li> <li>•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li> <li>•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li> <li>•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li> <li>•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li> <li>•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정보 처리</li> <li>•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li> </ul>

주체	업무역할
경찰청 (아동 청소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li> <li>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li> <li>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운영</li> <li>아동학대 관련 예산 운영</li> <li>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li> </ul>
시·도 경찰청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li> <li>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li> <li>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li> <li>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li> <li>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li> </ul>
아동보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교육</li> <li>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li> <li>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li> <li>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li> <li>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li> <li>사후관리</li> </ul>
학대피해 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li> <li>아동 심리치료 및 복귀 지원</li> <li>사례회의 참여</li> </ul>
아동 관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li> <li>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li> <li>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li> <li>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li> <li>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직무교육</li> <li>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li> </ul>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1), 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p.3  
김미숙 외. (2020), 아동보호 수행체계 개편 및 교육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아동복지학회

## 2 학대피해아동 보호흐름도

❗ 학대 발생시 모든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단계가 결정됨

### 1단계 신고 접수

- 아동 본인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고 가능(지역사회 주민, 신고 의무자 등)
- 경찰과 시군구 학대전담공무원이 동시에 접수

#### 아동학대 의심사례(예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신체학대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체벌 혹은 학대가 발생한 경우
- 아동이 성학대를 당한 경우 혹은 성학대 행위 의심자와 지속적으로 함께 지내야 하는 경우
- 학대 행위자가 보호자로서 심각한 정신질환 및 폭력성이 있어 수시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아동들만(0~12세) 방치되는 경우
- 아동 본인이 학대로 인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등

### 2단계 현장출동 및 학대조사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즉시 출동하여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아동일시보호

-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학대가 판정되기까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
- 필요한 경우 가해자 임시조치 등 실시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보호자(부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규정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규정을 숙지하고, 아동보호를 담당할 민간기관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4단계**  
학대여부  
판정  
(사례판단)

- 학대피해아동 사례판단은 지자체에서 진행함
- 학대가 아닌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을 원가정에 보냄
- 사례판단이후 조치는 2유형으로 분류됨. (1) 해우이자에 대한 처분이나 아동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를 청구하여 가정법원에서 조치함. (2) 비범죄의 경우는 보호배치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 보호조치계획을 수립함.
- 사례결정위원회 역할 : 일시보호연장조치, 장기조치, 가정복귀 등의 조치 실시

참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의한 임시조치**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해당 임시조치를 실시함

**5단계**  
보호조치  
(배치)

- 학대사례인 경우 아동에 대한 배치를 단기간에 해야 함
- 아동의 배치는 사례결정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회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관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 아동보호전문요원 및 기타 민간 관련자도 참석함
- 보호조치는 원가정 보호와 가정외 보호로 나뉘고, 아동이 배치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함

**6단계**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 원가정보호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 가정외 보호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외 보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사례관리하고, 아동보호전문요원은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함.
- 학대 피해아동(가족) 사례관리 회의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읍·면·동(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이 참여하여 통합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7단계**  
보호조치  
종결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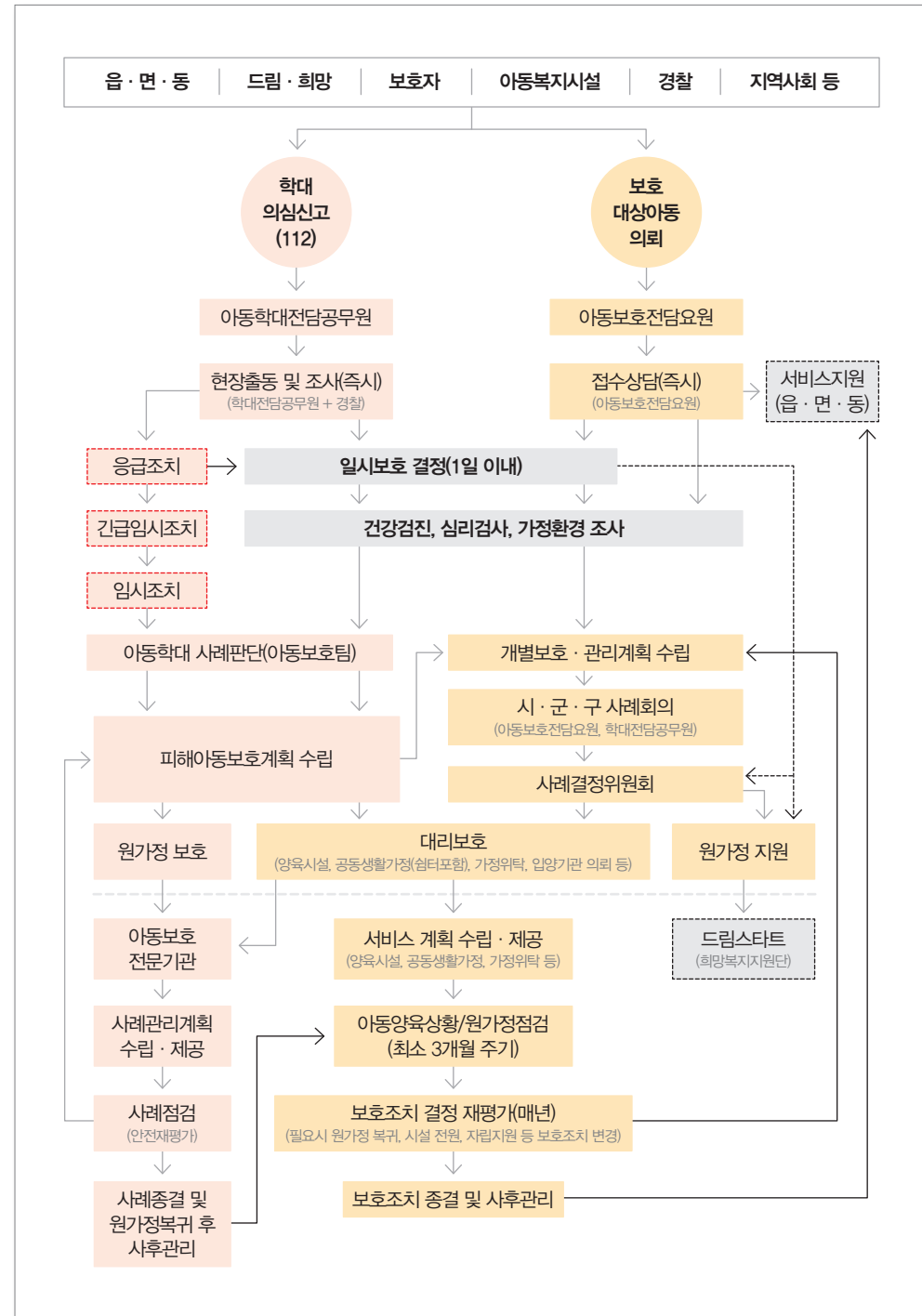
보호종료에서 필요시 읍면동으로 사례를 이관하여 보호 및 서비스 제공

참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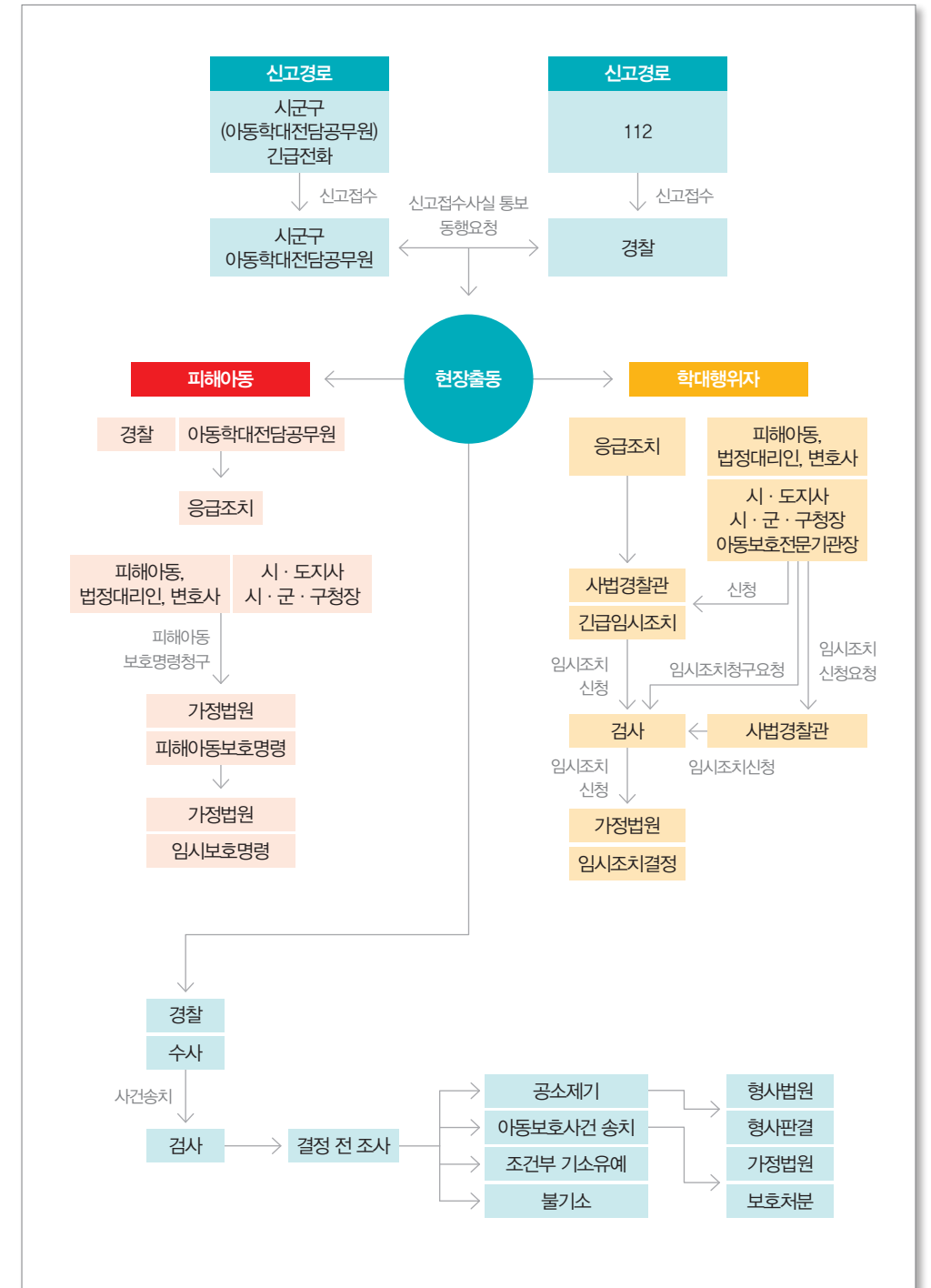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응급조치 3호(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실시 후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아동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아동의 안전한 시설보호가 되도록 지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을 통해 응급조치에 따른 임시조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72시간을 경과하여 아동의 시설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아동의 안전한 시설보호를 지원

[그림 1-1] 학대피해아동 보호흐름도



자료 : 보건복지부, 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18면.

[그림 1-2] 아동학대 사법처리 절차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0. 10.31. 인출

## 2 장

# 쉼터의 목적 및 설치기준

제1절 쉼터의 목적 및 근거

제2절 시설 기준

제3절 종사자 기준

제4절 시설설치 및 휴폐업

제5절 예산 및 예산운용

제6절 필수서류 및 운영위원회

## 제1절

# 쉼터의 목적 및 근거

### 1 쉼터의 목적 및 설치 근거법

#### • 쉼터의 목적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시보호' 시설임
- 쉼터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인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하는 것임(아동복지법 제52조의 2, 제52조제1항제4호)

#### • 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 쉼터의 설치근거법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의 기반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임
- ※ 동법에 의하면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2.]

####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4.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주요 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 설치주체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 또는 신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2 쉼터의 생활기간 및 일시보호시설과의 차별화

#### • 쉼터 현황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1년 말 현재 98개소가 있고, 한 해 약 1천여명의 아동이 쉼터를 이용하고 있음

〈표 2-1〉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98	6	4	2	4	4	4	4	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18	5	9	10	4	9	6	4	3

자료 : 보건복지부, 2022, 2022 아동분야사업안내 2, 204면.

- 쉼터에서는 시설당 5~7명이 생활하고 있고(2020년 쉼터 실태조사 결과 : 평균 5.2명),
- 3~9개월 동안(실태조사 결과 평균 생활기간 : 9개월 이상) 일상생활지원과 집중치료를 받은 후,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원가정 복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장기 시설로 전원됨
- 상황에 따라서 체류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일시보호시설과의 차이

- 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을 배치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인데 반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이기는 하지만, 보호기간과 목적이 상이함
- 시설의 목적에 있어서, 일시보호시설은 아동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기 전 임시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쉼터는 아동의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함
- 보호기간으로 볼 때, 일시보호시설은 최소 1주에서 최대 1개월 이내 보호를 종료하지만, 쉼터는 그 이상도 가능함

• 아동공동생활가정과의 차이

- 공동생활가정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임(아동복지법 제52조 4항)
- 반면, 쉼터는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뿐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쉼터를 공동생활과는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향후 쉼터는 학대피해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함

제2절

# 시설 기준

## 1 시설 설치장소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 1. 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 다. 다가구주택
  - 라. 공관(公館)
- 2. 공동주택**
  -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아동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산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단지 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양육 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쉼터 간 협력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2 설치기준

- 남녀 혼성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전용면적 : 100㎡ 이상의 주택형 숙소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기준에 의함(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6명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 아동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초등학생 이상은 분리보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
- 2015. 1.1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예외적으로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주택 이전 시에는 동 설치기준을 적용함
- 부동산매매,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 설치하려는 시·군·구 내에 전용면적 100㎡ 이상의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상, 100㎡ 미만인 아파트를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인정함. 이 경우에도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할 시·도가 사전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협의하여야 함

###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제한 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 설치 가능(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 • 내부구조

-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이상으로 심리치료용 방도 잠을 잘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쉼터 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서는 안됨
-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쉼터를 대규모 시설화 하는 것으로서 평범한 가정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표 2-2〉 쉼터아동 생활필수품 구성품

구분	구성품
개인	피복류, 속옷, 위생품, 화장품, 침구류, 가방류, 양말, 학용품, 수납용기, 침구류, 책상 및 의자
공용	목욕용품(삼푸, 치약, 수건 등), 화장실 용품(휴지, 비누 등), 식기, 여가도구, 운동도구, PC, TV, 냉온풍기, 응급의료도구
특수 (영유아)	영유아용 침대, 영유아용 김구, 포대기, 아기띠, 젖병소독기, 이유식식기, 카시트, 영유아식탁의자, 유모차, 보행기

- 지자체장은 주택을 물색할 때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최종 결정하기 전에 1) 주택 외경 및 내부사진 2) 매도인, 임대인 명의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함

〈표 2-3〉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기준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li> <li>•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li> <li>• 몇 개의 공동생활가정을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한다.</li> <li>• 쉼터에서 50m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li> </ul>
구성 및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소로 설치해야 한다.</li> <li>• 4개 이상의 방이 있으며, 그중 피해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실이 있어야 한다.</li> <li>• 화장실 및 목욕실은 2곳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li> </ul>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 내 안전관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li> <li>• 창문, 방충망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li> <li>• 쉼터 외부에 CCTV 카메라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li> <li>• 쉼터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li> </ul>

자료 : 보건복지부, 2020. 2020 아동분야사업안내 2.

• 유의사항 : 시설 비공개 원칙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소재지 시·군·구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보호조치 된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 등 지원, 협조(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은 가정폭력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정 내에서 친권자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한 피해아동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 적용 가능

제3절

종사자 기준

1 종사자 배치기준

• 직원의 배치

- 시설장 1명
- 보육사 4명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 ※ 직원채용 관련하여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규정)에 따름
  - ※ 시설장 및 보육사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

2 종사자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5)

• 시설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임상심리 전문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별지 1호 참조

〈별지 1호〉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종류	자격명	시행기관	구분
심리평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1급, 2급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2급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없음
놀이치료	놀이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1급, 2급, 3급
미술치료	임상미술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사
	임상미술심리전문가	한국심리치료학회	-
음악치료	음악치료사	한국음악치료학회	1급, 2급, 준2급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
모래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전문가, 1급, 2급
언어치료	언어재활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급, 2급
인지학습치료	인지행동지도전문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1급, 2급
심리상담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급
	청소년상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2급, 3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2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수퍼바이저, 1급, 2급

자료 : 보건복지부, 2022. 2022 아동분야사업안내 2, 339면

**3 종사자 결격사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 상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폐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시설장의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보육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기타 사항**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범죄경력, 성범죄 전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함
- 시설장은 쉼터에 상근해야 함
- 종사자의 각종 휴직 등에 대비해서 정부는 대체인력을 확보해야 함
- 집중돌봄 필요 발생에 대비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제4절

# 시설설치 및 휴폐업

### 1 시설 및 지정

- 학대피해아동은 민간(비영리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 아동만 입소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동생활가정의 하나임
- 따라서, 제반 행정절차는 공동생활가정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절차만 추가됨
- 기존 일반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하는 경우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존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수리 사항 중 신고조건을 변경하여 신고 수리함.
  - 즉, 기존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조건 :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함'으로 변경하여 교부
- 신규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설하는 경우 :
  -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 운영할 법인 공개모집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정된 운영법인이 설치하는 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 및 '신고조건 :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함'으로 하여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교부

### 2 휴업, 폐업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폐업, 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 폐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절

# 예산 및 예산운용

### 1 예산

#### 1) 사업개요

- 목적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신규 설치비 지원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등을 위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예산지원 세부기준

##### • 국고 보조대상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시설

##### • 국고보조율 : 40% (국비 40%, 지방비 60%)

※ 각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을 추가하여 편성 가능

### 3) 비목별 예산 활동기준

#### • 공통

- ① 원칙적 전용불가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용 불가
- ② 예외적 전용기준 : 설치 주체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사업비로,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 이 경우, 사전 승인의 주체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전용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전용 승인을 위해서는 전용의 목적, 규모 및 전용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를 운영비, 사업비로 전용, 운영비,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모두 불가함
- ③ 자원 아동 유무와 관계없는 예산 적용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이므로 채용하고 있는 아동이 없는 경우라도 개소하여 운영 중인 경우 개소일(사회복지시설 신고서 상 설치일)을 기준으로 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가능
- ④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 2 예산지원 세부 기준

### 1) 국고 보조대상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 2) 보수 지원기준

-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의 보수월액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용을 권고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 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지자체 추가지원 및 자부담(후원금 포함) 등을 포함하여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
- 보수를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급은 보수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보수월액의 209분의 1로 계산함.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

- 계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계산
-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감봉,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日割) 계산

### 3) 호봉의 확정 및 승급

- 호봉확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 종사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의 호봉확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
- 상기 규정 이외의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

### 4) 수당

- 수당의 종류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월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 보수월액의 120%(보수월액의 60%씩 연 2회)
-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정액으로 지급 가능
  - (배우자) 40,000원, (직계 존·비속) 20,000원
- 시간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제5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
- 상기 수당 이외의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보조금으로 특수 근무수당(위험업무수당)등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음

### 5) 퇴직금

-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함
  - 다만,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름

### 6)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기준

- 운영비 및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 권고안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지출하여야 함

## 필수서류 및 운영위원회

### 1 필수 비치 서류

- 장부 등의 비치 :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법인의 정과 및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설장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공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거주자 대표(아동),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부모), 지역주민 대표 등은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 3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서식 21호 및 22호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 매 회계연도 종료(12월)후 1월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관할하는 시·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사회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검토 결과와 함께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 접수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매년 12월까지)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매 회계연도 종료(12월) 후 1월 이내
- 보조사업자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역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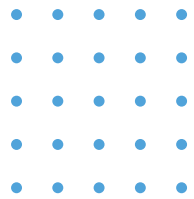
# 아동보호와 사례관리

제1절 입소관리

제2절 사례관리

제3절 양육과 치료관리

제4절 퇴소와 사후관리





## 제1절

# 입소관리

### 1 아동 입소 전 초기 절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 입소 문의

-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관내 쉼터에 연락하여 긴급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이 수용 가능한지를 문의해 옴
- 쉼터에 아동이 수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의 입소를 요청함
- 아동 입소 전 쉼터 담당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해 아동의 성, 연령, 학대유형, 교육/교육기관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 외에 아동에게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일차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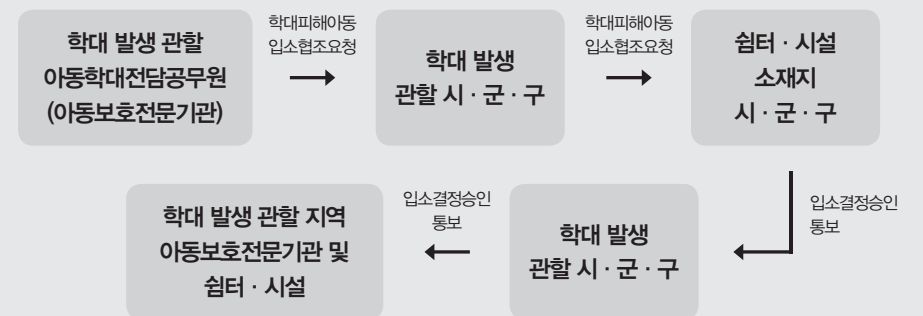
#### • 아동 입소 당일

- 아동의 입소가 통고 된 날짜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을 쉼터에 데려옴
- 아동이 입소할 때 쉼터 담당자는 가장 먼저 아동의 체온을 측정하고 아동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함
- 쉼터 담당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 후 아동의 소지품을 확인함
- 아동에게 쉼터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 구두 동의를 얻은 다음, 아동이 입소한 후 서면 동의를 받음
- <아동 입소 시 확인 사항>을 작성하고, 기록을 위하여 사진 첨부함

#### 쉼터 입소 처리 요령

- 쉼터 소재지 시·군·구 아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동도 입소 가능함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의 거주지, 특성, 연령 등을 이유로 피해아동 입소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적극적 지도감독 필요

- 피해아동이 지구대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모든 시·군·구가 피해아동 입장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상호협력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되어 보호시설로 인도 되는 경우,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출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서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갈음하여 보호조치 실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아 보호조치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및 이에 따른 법원 결정문으로 갈음하여 보호조치 실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 보호대상아동의 입소의뢰 또는 입원의뢰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
  - 담당 공무원은 피해아동의 특성 등(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을 감안하여 관할지역 내 피해아동이 입소 가능한 아동복지시설을 파악하고 연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를 적극 진행
-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사안에 따라 적의 적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필요(우선적용원칙 없음)
- 아동학대 업무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이라도 필요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체류, 출생신고 미등록, 무연고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출처 :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아동 입소 시 확인 사항 예시

아동 입소 시 확인 사항			
<b>인적정보</b>			
입소일	년 월 일	입소의뢰기관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현재 나이	( )세 ( )월
<b>건강상태</b>			
체온	( )℃	코로나19 선별검사	( )차
일반적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 ) <input type="checkbox"/> 질환(유형 : )		
<b>학대 관련</b>			
유형(다 체크)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심리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기타( )		
피해 상흔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내용 : )		
병원	<input type="checkbox"/> 치료 <input type="checkbox"/> 진료 <input type="checkbox"/> 약물복용	진료과	
특이 사항	<input type="checkbox"/> 기타(예 : 음식 알레르기 )		
<b>교육 관련</b>			
보육/교육기관	<input type="checkbox"/> 안 다님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		
<b>아동 소지품 수량</b>			
피복류	<input type="checkbox"/> 속옷( ) <input type="checkbox"/> 상의( ) <input type="checkbox"/> 하의( ) <input type="checkbox"/> 외투( ) <input type="checkbox"/> 교복( ) <input type="checkbox"/> 양말( ) <input type="checkbox"/> 신발( )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학용품	<input type="checkbox"/> 책가방( ) <input type="checkbox"/> 문방품( ) <input type="checkbox"/> 장난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개인 소지품	<input type="checkbox"/> 핸드폰( ) <input type="checkbox"/> 교통카드( ) <input type="checkbox"/> 화장품( ) <input type="checkbox"/> 귀중품( ) <input type="checkbox"/> 용돈(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관련 문서 수령

- 아동 입소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지자체로부터 받게 됨
- 아동 입소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또는 쉼터전담공무원)은 아동 입소 요청 공문, 아동카드, 입소의뢰서를 보내 줌
- 아동카드에는 아동의 신체적 특징 등 학대조사 내용이 들어 있음
- 입소의뢰서에는 아동의 성, 연령, 주민번호 등의 개인적 정보와 입소사유, 보호시설 정보 등 학대 관련 정보가 들어 있음
- 쉼터에서는 아동이 입소한 후 일주일 내 관련 문서를 받도록 함

### • 기관 협조

- 쉼터 담당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심리치료 결과를 요청할 수 있음
- 재학대 사례일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기존의 학대사례 정보를 요청함
- 전원 조치일 경우 이전 시설에서 관리하던 사례개요와 생활일지를 요청함(예 : 일시청소년시설, 공동생활가정, 부적응 및 응급치료시설)

### • 시스템 등록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학대피해아동 사례를 등록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아동의 입소를 등록함

### • 아동 입소 후 확인 사항

- 쉼터는 <아동 입소 후 체크리스트> 확인함
- 아동은 입소 후 <아동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작성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예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그룹홈 생활 아동의 개인정보를 아래 내용과 같이 수집,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아동보호관련 업무(병원진료, 약 처방, 학교 및 학원 관련업무, 연계기관)
- 지자체 보고(입·퇴소 및 현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통해 아동권리과에 보고함)
- 심리치료 소견(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원시설)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소속 외 아동카드 각 항목
- 선택정보 : 계좌번호, 이메일

####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위에 기재한 수집 이용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후,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 확인된 때에 파기함.

※ 아동은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함께 지내는 동안 위 생활규칙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아동권리(아동보호) 정책 관련하여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으며  
규칙을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에는 퇴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인)

보호자 \_\_\_\_\_ (인)

(○○학대피해아동쉼터)

## 초상권 사용 동의서 예시

### 초상권 사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및 권리 내용 안내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아래와 같이 그룹홈 생활 중 아동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저작물, 이미지 등을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① 사용목적

- CCTV 영상 : 아동 안전 관련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함.
- 사진, 영상 및 저작물 등 : 법인 및 지자체 등 프로그램 계획 및 보고용, 후원사업 결과 보고용, 정기소식지 등에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음.

#### ② 입소아동 초상권 관리

- 입소아동의 초상권은 동의 없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함.
- 모든 보고 및 소식지에 사용한 아동의 사진은 얼굴 이미지를 가리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③ 아동 초상 및 저작권의 보유·이용 기간

아동 관련 사진 및 영상, 저작물 등은 위 사용목적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미가 없는 이상, 불필요하게 된 것이 확인된 때에 즉시 파기함.

※ 아동은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혜택이 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호자 요청 시 아동 개인 사진 전달 가능합니다.

#### 초상권 사용 동의서

본 \_\_\_\_\_ 아동은 본인이 촬영된 초상 사진, 저작물, 이미지 등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항목 : CCTV 영상 → 거실 및 현관에 보이는 영상(한 달분)

사진 →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정기소식지에 얼굴 이미지는 가리고 정보 제공함.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이름 \_\_\_\_\_ (인)

보호자 \_\_\_\_\_ (인)

(○○학대피해아동쉼터)

## 2 입소 후 지원 절차

### 1) 생활 지원

#### • 입소패키지 “홈키트” 지급

- 홈키트 구성의 기본은 규격품인 미니 캐리어 1개임
- 홈키트 내용은 피복류, 학용품, 위생품 등으로 구성하며 아동의 성과 학령에 맞도록 구성함
- 피복류 : 속옷, 잠옷, 겹옷, 양말, 신발, 실내화가 기본이며 계절에 따라 외투나 필요한 경우 교복도 준비함
- 학용품 : 책가방, 문구류, 준비물, USB, 개인 이어폰 등
- 위생품 : 세면도구, 여아 위생품, 화장품
- 발달용품 : 영유아의 경우 장난감이나 인형을 준비함
- 기타 : 쉼터 비상 대피도, 쉼터 생활규칙 복사본 같이 넣어 줌

홈키트 구매 예시		
구매 품목		수량
1	홈키트 기본 가방 (미니 캐리어)	1
2	개인 컵	1
3	치약 칫솔 세트	1
4	샤워 타올	1
5	머리빗	1
6	팬티(3입) 95	1
7	내복(SET) 120	1
8	양말(M-L) 3족세트	1
9	헤어 밴드(세안용)	1
10	개인 이어폰	1
11	주니어 브라 런닝 90	1
12	실내화	1
<b>총 합계</b>		

## 입소패키지 구성목록표(견본)

입소패키지 구성목록표 (견본)			
<b>영, 유아용</b>			
영, 유아용	<input type="checkbox"/> 속옷 3벌 <input type="checkbox"/> 상하의 3벌	<input type="checkbox"/> 잠옷 1벌 <input type="checkbox"/> 양말 5족	
위생용품	<input type="checkbox"/> 베이비워시 <input type="checkbox"/> 칫솔치약세트	<input type="checkbox"/> 베이비로션	
발달용품	<input type="checkbox"/> 인형(장난감) <input type="checkbox"/> 학용품	<input type="checkbox"/> 개인물통 <input type="checkbox"/> 기타(USB)	
<b>초등용</b>			
초등용	<input type="checkbox"/> 속옷 3벌 <input type="checkbox"/> 상하의 1벌 <input type="checkbox"/> 양말 5족	<input type="checkbox"/> 잠옷 1벌 <input type="checkbox"/> 외투 1벌 <input type="checkbox"/> 신발 1켤레	
위생용품	<input type="checkbox"/> 목욕 바구니 <input type="checkbox"/> 칫솔 치약 세트	<input type="checkbox"/> 바디로션 <input type="checkbox"/> 파우치	
학용품	<input type="checkbox"/> 물통 <input type="checkbox"/> 크로스백 <input type="checkbox"/> 필통, 필기구세트 <input type="checkbox"/> 기타(USB)	<input type="checkbox"/> 지갑 <input type="checkbox"/> 실내화	
<b>중, 고등학생용</b>			
중, 고등학생용	<input type="checkbox"/> 속옷 3벌 <input type="checkbox"/> 상,하의 1벌 <input type="checkbox"/> 양말 5족	<input type="checkbox"/> 잠옷 1벌 <input type="checkbox"/> 외투 1벌 <input type="checkbox"/> 신발 1켤레	
위생용품	<input type="checkbox"/> 목욕바구니 <input type="checkbox"/> 스킨로션세트 <input type="checkbox"/> 화장품 파우치 <input type="checkbox"/> 여성청결제	<input type="checkbox"/> 폼클렌징 <input type="checkbox"/> 칫솔,치약세트 <input type="checkbox"/> 생리대 파우치	
학용품	<input type="checkbox"/> 물통 <input type="checkbox"/> 필통, 필기구세트	<input type="checkbox"/> USB <input type="checkbox"/> 기타	

• 아동 생활용품 준비

아동 생활용품은 개인 생활용품과 공용 생활용품으로 나누어 제공함

개인 생활용품		
구성품	세부항목	
1	피복류	상의, 하의
2	속옷	스포츠브라, 팬티, 런닝셔츠, 속바지
3	위생품	여아 생리용품
4	화장품	스킨, 로션, 선크림 등
5	침구류	베게, 이불
6	가방류	책가방, 실내화가방, 보조가방
7	양말	양말, 덧신
8	학용품	필기도구, 노트, 이어폰, USB 등
9	수납공간	옷장, 수납 바구니
10	취침공간	침대 또는 접이식 매트
11	학습공간	책상, 의자

공용 생활용품		
구성품	세부항목	
1	생활필수품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수건, 휴지, 식기류 등
2	여가 도구	보드게임, 도서, 클레이아트 등
3	운동 도구	배드민턴용품, 줄넘기, 훌라후프, 킥보드 등
4	PC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5	TV	TV
6	냉온풍기	에어컨, 선풍기, 보일러 등
7	응급의료도구	비상약 일체, 체온계 등

• 영유아 생활용품 준비

- 36개월 이하 영유아가 대상임

- 가구(침대, 침구, 영유아용 식탁 의자), 피복(포대기, 아기 띠), 식기(이유식 식기), 발달용품(보행기), 기타(카시트) 등으로 구성함

영유아 생활용품		
구성품	세부 항목	
1	영유아용 침대	범퍼침대
2	영유아용 침구	베게, 이불
3	포대기	포대기
4	아기 띠	아기 띠
5	젓병소독기	젓병소독기
6	이유식식기	식판, 숟가락, 젓가락, 포크, 컵, 젓병
7	카시트	카시트
8	식탁 의자	영유아용 식탁 의자
9	유모차	유모차
10	보행기	보행기

• 입소 오리엔테이션 실시

- 아동 입소 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오리엔테이션 진행 순서는 쉼터 및 구성원 소개, 전반적인 쉼터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아동권리와 함께 공동생활에서 지켜야할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함

-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아동에게 쉼터를 둘러보게 하며 내부구조, 방 배치, CCTV, 긴급대피처 등을 설명함

- 안내한 내용에 따라 입소 서약서와 개인정보 및 초상권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은

##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금의 상처를 잘 치료하고 회복하도록 쉬어 가는 우리들의 따뜻한 '집'입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숨~! 비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집 주소를 이야기하거나 같이 사는 친구, 언니,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집이 보이도록 영상통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도 집에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서로를 지켜줘야 해요.

##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함께 먹고 자며, 서로서로 가깝고 친하게 지내지만 다른 친구에게는 꼭 "똑똑",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라고 불러요. 경계가 있어야 나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이 섞이지 않아요. 또 몸을 부딪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계가 있어야 나도, 함께 지내는 친구도 안전할 수 있어요.

## 우리 모두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 안전한 집에서 충분히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
- 누군가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권리
-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배울 수 있는 권리
-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요

-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요
- 이야기하기 힘들 때는 편지를 써도 되고, 아동회의 때 함께 이야기해도 돼요
-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선생님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선생님께는 비밀 이야기를 해도 안전해요

## **잘 먹고 잘 자기**

- 건강한 음식과 간식을 먹어요
- 좋은 꿈꾸며 잘 자도록 그림책을 읽어요
- 필요할 때에 필요한 옷을 구입해요
- 내 용돈을 스스로 관리해요

## **학교·학원 잘 다니기**

- 학교와 학원을 잘 다녀요
- 배우고 싶은 공부(영어, 수학 등)를 배울 수 있어요
-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배워요
-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해요

## **잘 놀기**

- 가족들이로 수영장, 바닷가 등 야외로 놀러 가요
-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견학을 가요
- 영화, 연극, 서커스 등 공연을 봐요
- 공원, 놀이터로 산책을 해요

## **몸과 마음 아프지 않기**

- 마음이 아플 때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해요
- 몸이 아플 때는 바로 병원을 가요
- 먹는 약 또는 바르는 약을 챙겨요
- 아프지 않아도 건강을 항상 체크해요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서로 다치지 않게"

함께 사는 동안 서로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처 주는 일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함께 노력해요

## 2) 건강지원

### • 응급 진료

- 학대로 인해 상흔을 보이거나 즉각적인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임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 병·의원과 연계하여 응급 진료를 받도록 함

### • 종합건강검진

- 신규 입소아동이 발생한 주에 실시하도록 함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가능 병·의원, 안과, 치과 등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함
- 건강검진 내용은 신장, 체중, 청각, 시각, 치아, 혈액형, B형 간염, 흉부엑스레이, 소변검사 등임
- 안과와 치과 진료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신경정신과 진료도 포함함

### • 예방접종

- 아동발달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아동 연령별 필요 예방접종을 확인하여 접종하도록 함
- 특히 영유아의 경우 예방접종은 필수적임
- TIP 1 :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s://kdca.go.kr/data>)
- TIP 2 : 아동 발달연령별 필수 예방접종 정보(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
- TIP 3 :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도록 함
- TIP 4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도록 함<sup>2)</sup>

### • 수시 진료

- 사고,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
- 의료비, 진료비, 약 조제비를 지급하도록 함

2) 2021.12.31. 기준 전국 122개 시·군·구에 285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3) 비밀전학과 등교·학습지원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업무

- 교육청이 아동이 전학 갈 학교에 공문을 전달하면 학교는 쉽터로 아동의 전학 사항에 대해 연락을 하게 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의 전학 문제를 처리하므로, 쉽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해 비밀전학인지 교환학습인지를 확인함

#### TIP

#### 교환학습과 비밀전학

1) **교환학습**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교환학습'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시설에 학대피해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동안 전학 없이 현 거주지 근처 학교로 등교하고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받는 것(교육부훈련 제34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 **비밀전학** 피해아동이 안전유지 등을 이유로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해아동의 전학 관련하여 취학업무 관계자 외에 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전학조치 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핵심 :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등)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밀전학이 가능함

### • 비밀전학 업무 절차



※ 각 지역 시·도 또는 시·군·구 교육지원청마다 비밀전학의 처리 주체,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절차 확인 후 진행 필요

※ 비밀전학 처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처리된 상황에 대해 인지하여 개입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쉼터의 전학 지원 업무**

- 학교 교무실로 전화해서 이전 학교로부터 아동의 학적 서류가 도착했는지 확인함
- 입소확인서를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함
- 아동의 쉼터 거주에 대해 학교 측에서 비밀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함
- 비밀전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석 인정을 요청함

• **쉼터의 등교 학습지원 업무**

- 아동이 새 학교에 배치되면 학교에 관해 설명하고 전학에 대한 의견을 묻기
- 아동과 함께 안전한 등하곳길 시뮬레이션 실행하기
- 등교 첫날 아동을 동행하여 반 배정을 확인하고 담임선생님과 인사하기
- 쉼터 전화번호 알려주기와 학년/반, 담임선생님 이름과 전화번호 알아 오기
- 학교 준비물 챙기기, 물품 지원 등

제2절

# 사례관리

## 1 쉼터 사례관리 목적과 개념

- 일반적인 사례관리 개념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생태체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 및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대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획득하고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접근 방법을 의미함<sup>3)</sup>
- 쉼터의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것임(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
- 따라서 쉼터의 사례관리 개념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신 회복과 역량 강화를 기하고, 원가정 복귀 후에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별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적이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2 사례관리 주요 과정

• **쉼터 사례관리 흐름도**

- 쉼터 사례관리는 다음의 7단계로 진행됨



3) 김경희 · 윤민화 · 정해린.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통합적 사례관리 실천경험. 한국아동복지학 68, p. 4.



### • 쉼터 사례관리 단계별 실행 내용

- 입소 단계 : 입소관리 진행<sup>4)</sup>
- 사정 단계 : 개별아동의 특성 및 욕구 사정
- 계획 수립단계 : 사정을 바탕으로 보호계획과 치료계획 수립
- 실천 단계 : 학대피해아동에게 양육서비스와 치료서비스 제공<sup>5)</sup>
- 재사정과 재계획 : 개별아동에 대한 서비스 실천이 진행된 후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아동사례를 재사정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획 수립
- 평가 단계 : 아동과 서비스에 대한 내부평가 실시
- 퇴소 단계 : 퇴소관리 진행<sup>6)</sup>

## 3 사정

### • 초기사정

- 아동 입소 후 1주일 내
- 병·의원 진료를 거쳐 건강검진 결과와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사정 실행

### • 본 사정

- 아동 입소 후 1개월 내
- 초기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정 진행
- 아동의 발달상태, 장애 유무, 질병 유무, 섭식 상태, 정신건강, 문제행동 확인
- 아동의 학습 의욕과 문화적 및 사회적 욕구 파악
- 아동이 가진 자원 및 강점과 장애요인 확인

4) 실제 입소관리 진행은 제1절 입소관리 참조

5) 실제 양육서비스와 치료서비스 제공은 제3절 보호와 치료관리 참조

6) 실제 평가와 퇴소 진행은 제4절 퇴소관리와 사후모니터링 참조

## 4 계획수립

### • 목표 설정

- 아동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나누어 설정
- 쉼터 설립 목표 :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트라우마 극복과 자존감 향상과 같은 아동의 정서적 및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고, 쉼터 생활 적응을 통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것(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
- 장기목표 :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임. 트라우마 극복이나 자존감 향상과 같은 아동의 정서적 및 심리적 안정을 획득하고자 함. 쉼터 생활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적응을 도모함
- 단기목표 : 장기목표 설정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수립하며 상시 변경할 수 있음
- 목표 재수립 또는 재계획 목표 : 단기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목표를 수정할 수 있음. 개별아동 특성에 따라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초점영역을 수정하도록 함

### • 서비스 계획 수립

- 아동의 특성, 주 호소 내용, 특이사항을 바탕으로 함
- 보호계획과 치료계획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육사와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모두 참여함
-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 서비스 계획서〉 작성함

### • 재계획 수립

- 필요시 재계획을 수립함
- 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일차 작성했던 계획서를 참고함
- 보육사와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모두 참여함
- 〈아동 서비스 계획서〉 활용함

아동 서비스 계획서 예시

아동 서비스 계획서						
□ 초기계획 □ 재계획 □ 후속계획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만)	
기본사항	입소일		담당 지자체			
발달상태	키	cm	몸무게	kg	상태	□ 양호 □ 불량
건강문제	상태		섭식문제			□ 무 □ 유 ( )
학대특성	유형	□ 신체 □ 심리정서 □ 성 □ 방임		상흔		□ 무 □ 유 ( )
아동특성	심리 정서					
	고려 사항					
	욕구	(학습, 문화, 사회적 측면)				
주호소 및 핵심 문제	주호소					
	핵심문제					
	핵심문제 원인 / 강화요인					
장기목표						
보호계획	구체적 단기목표					
	접근 방법					
	서비스 시작일					
	개입 기간/ 주기					
치료계획	구체적 단기목표					
	치료 유형					
	접근 방법					
	예상 치료기간(회기 수)					
	치료 시작일					
	치료 주기					

5 사례회의 운영

• 사례관리 단계별 사례회의

- 사례회의는 내부 회의와 외부와의 회의로 나눔
- 내부 사례회의 : 쉼터 자체 내에서 개최하는 정례적인 회의로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 입소부터 퇴소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최함
- 외부와의 사례회의 : 외부기관과 연계·협력 사례회의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의 관련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연석회의임
- 사례관리 단계 가운데 입소단계, 계획단계, 평가단계, 퇴소단계에서 개최하게 되며, 계획단계와 평가단계에서는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3자가 참여하는 통합 연석회의가 필수적으로 개최되어야 함
- 회의 내용과 회의 방법은 보호조치 기간(3, 6, 9개월)에 맞게 운영함

내부 사례회의 운영

단계	회의성격 (주기)	참여 범위와 인력		회의 내용	방법	활용자료
		쉼터				
입소부터 퇴소까지	정례회의 (필요시)	시설장 보육사 치료사		• 초기사정 • 본 사정 • 보호치료서비스 • 양육서비스 • 퇴소지원	대면	• 심리치료 결과 • 건강진단 결과 • 보호치료계획서 • 가정복귀소견서 • 심리치료종결보고서

외부와의 연계·협력 사례회의 운영

단계	회의성격 (주기)	참여 범위와 인력			회의 내용	방법	활용자료
		쉼터	아보전	지자체			
입소	연계	보육사	-	전담 공무원	• 아동정보 취득	대면, 화상, 전화	• 입소아동의뢰서 • 아동카드
계획	협력 (필수)	시설장 보육사 치료사	상담원	전담 공무원	• 심리치료 • 보호서비스 • 양육서비스	대면, 화상	• 상담일지 • 보육일지 • 회의자료
평가	협력 (필수)	시설장 보육사 치료사	상담원 (보호자 치료사)	전담 요원	• 통합사례 • 재사정과 재계획	대면, 화상	• 사례관리 자료
퇴소 종결	협력	보육사 치료사	상담원	-	• 아동생활 • 아동보호 계획 • 앞으로의 거취 • 문제아동 사례	대면, 화상	• 사례관리 자료 • 심리치료종결보고서 • 가정복귀소견서

## 6 사례관리 입력

### • 국가학대아동정보시스템(National Child Abuse Information System, NCAIS)

-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아동 입퇴소 현황 입력
- 사례개입 입력 : 쉼터 생활, 심리치료와 상담, 학교생활, 건강 및 의료 등
- 서비스 입력 :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입력(아동 1명당 서비스 건수)
- 매월 말 혹은 매월 초 주기별 사례입력 확인과 누락 사항 점검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SSIS)

- 아동 관련 기본적인 정보 입력
- 입퇴소 관련 절차 : 초기면접, 사후관리, 기본적 쉼터생활 관리
- 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입력 : 계획, 일지, 진행 입력
- 교육관리, 상담관리, 아동별 보육일지 등
- 아동 개인별 회의록 입력
- 개별 사례관리 자료 입력 : 회의록
-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내용 입력

### • 사례관리 파일 생성과 작성

- 개별아동별로 사례관리 파일을 생성해서 사례관리 단계에 따라 사례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쉼터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 서식을 만들 필요 있음)
- 기타 양식들은 작성한 후 업로드하도록 함
- 기타 서류는 서류철 만들어서 각종 서류 및 인쇄물 제철 및 보관

## 제3절

# 양육과 치료관리

## 1 양육관리

### 1) 양육서비스

#### • 양육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의복 등 생필품 제공, 일상생활 훈련과 적응 등
- 의료지원 서비스 : 건강검진 지원, 병원 진료, 응급조치 등
- 교육지원 서비스 : 학업지도, 교육서비스, 안전교육, 경제교육, 교통 지원 등
- 문화여가지원 서비스 : 문화행사, 문화체험, 체육활동, 놀이프로그램
- 아동상담서비스 : 아동상담, 유관기관상담

#### •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 프로그램 진행과 서비스 제공 시 아동의 특성 혹은 특이사항을 고려함
- 36개월 미만 영유아, 정신·지적·정서장애, 일탈 및 문제행동 등 고려함
- 피해아동 보호기간에 따라 아동 특성 혹은 특이사항 고려함
- 특히 통합사례회의 시 피해아동의 보호기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TIP

#### 서비스 제공 시 피해아동 보호기간에 따른 고려사항

- 1개월 미만 : 응급사례, 아동 트라우마, 문제행동 노출
- 1~3개월 미만 : 기본적 보호와 양육서비스 제공
- 3~6개월 미만 : 개별아동 특성별(성, 연령/학령, 장애 유무 등의 아동특성별, 아동육구별)
- 6개월 이상 : 원가정 복귀, 타시설 전원, 자립지원 연계

쉽터 아동양육서비스 내용 예시

쉽터 아동양육서비스 내용				
영역	서비스명	내용	고려 사항	
아동 보호	일상 생활 지원	일일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시군구의 요청에 의한 학대피해 아동	
		위생지도	위생에 대한 교육 및 습관 형성과 목욕비 지원	
		이미용	위생에 대한 교육 및 습관 형성과 이미용비 지원	
		의복지원	응급조치아동 및 계절과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의복 지원	
	의료 지원	생활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주부식비 지원	
		건강검진	쉽터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의 건강검진 지원	
		응급치료	응급상황 발생 시 119 혹은 병원응급실 방문하여 응급처치 실시	
병원진료	보호아동의 건강 이상시 인근병원을 방문,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 문화	교육 지원	경제교육	적당한 용돈지급과 사용지도로 만족감 형성 및 도박 예방	
		교육지원	교육 및 특기적성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학습교통지원	숙제 및 준비물 준비지도 및 아동 교통비, 급식비 지급	
		아동안전교육	교통안전, 성폭력,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실종유괴, 인권 교육 실시	
	자체프로그램	예체능 및 쉽터 자체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아동 간의 유대감 강화		
	문화 여가 지원	행사지원	아동생일, 명절, 기념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졸업식 등 행사지원	
		문화체험	입소아동의 문화체험 활동 지원(영화, 공연, 가족여행 등)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지원	심리검사	입소아동의 심리검사 및 외부검사/외부상담 연계	
아동 상담	상담 지원	아동상담	쉽터 생활, 학교생활 등 개별상담 실시	
		유관기관상담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보육시설과 상담 실시	

아동양육서비스 실제 -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 연간 계획표

교육문화서비스 연간 계획표				
	가족행사 및 기념일	문화체험활동	안전교육	자체프로그램
1월	•해돋이 •생일잔치	•영화관람 •지역사회 나들이	•약물오남용 •실종유괴예방 •교통안전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아동 프로그램 진행 (월 2회 이상)  • 기초학습지도 • 요리활동 • 미술활동 • 생활체육 • 그림책 활동  • 가족회의 • 고충처리  • 진로체험활동
2월	•명절행사 •생일잔치 •졸업식	•영화관람 •쿠킹클래스	•재난안전	
3월	•삼일절 •생일잔치 •입학식	•영화관람 •벚꽃나들이 •볼링	•교통안전 •성폭력예방 •아동인권	
4월	•식목일 •봄소풍 •생일잔치	•클라이밍 •대공원자전거	•약물오남용 •실종유괴예방	
5월	•어린이날 •스승의날 •생일잔치	•영화관람 •지역사회 나들이	•교통안전 •성폭력예방	
6월	•현충일 •생일잔치	•낭만캠핑1 •야구경기관람	•약물오남용 •실종예방	
7월	•제헌절 •생일잔치	•연극관람 •워터파크	•재난안전 •교통안전 •아동인권	
8월	•광복절 •생일잔치	•여름방학캠프 •박물관관람	•성폭력예방	
9월	•명절행사 •생일잔치	•농구경기관람 •낭만캠핑2	•약물오남용 •실종예방	
10월	•가을소풍 •생일잔치	•영화관람 •제주가족여행	•성폭력예방	
11월	•생일잔치	•영화관람 •시티투어	•재난안전 •아동인권 •교통안전	
12월	•크리스마스 •생일잔치	•영화관람 •썰매타기	•약물오남용 •실종유괴예방	

아동양육서비스 실제 -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월 프로그램 계획표

월 프로그램 계획표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1	2	3	4	5	6
		3.1절 의미 새기기 /주간학습	신체활동	주간학습	원예활동	자율활동 (보육사 DAY)	산책/ 자율학습 아동생일
2주	7	8	9	10	11	12	13
	대청소/ 산책 문화체험	신체활동	주간학습	주간학습	신체활동	방구석 노래방	산책/ 자율학습
3주	14	15	16	17	18	19	20
	대청소/ 자율시간/ 요리활동	주간학습	교통안전 교육	주간학습	신체활동	성교육	영화관람
4주	21	22	23	24	25	26	27
	대청소/ 자율시간	신체활동	신체활동	주간학습	주간학습	가족회의	산책/ 자율학습
5주	28	29	30	31			
	대청소/ 자율시간	주간학습	재난안전 교육	주간학습			

아동양육서비스 실제 -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문화프로그램 계획서

문화프로그램 계획서 양식				
<b>프로그램명 :</b>				
<b>목적 :</b>				
<b>세부목표 :</b>				
가.				
나.				
<b>1. 세부 추진계획</b>				
<b>일시 :</b>				
<b>장소 :</b>				
<b>참가인원 :</b> 총   명(참가아동 :   명 / 참가성인 :   명)				
<b>업무분장</b>				
○○○(시설장)				
○○○(보육사)				
○○○(보육사)				
<b>업무일정 또는 프로그램 세부 일정</b>				
날짜	내용	날짜	내용	
<b>준비물 :</b>				
<b>예산비용 :</b> 금일백십만천백원정 (₩0,000,000)				
내역	단가	수량	금액	
총계				
<b>2. 아동안전보호 관련 예방 및 조치 계획</b>				
단계	영역	위험요인	아동안전보호 적용/조치 방안	적용 시기

구분	문화프로그램 사전답사 현장 점검표	확인	조치
아동 안전 보호	행사장소, 활동 등은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아동 대비 보호자의 숫자가 기관 내부규정에 맞게 배치되었는가		
	아동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안전보호담당자의 연락처가 공유되어 있는가		
	아동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시 또는 행사관련 불만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예. 건의함 등)		
	아동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시 24시간 내 아동안전보호담당자에게 보고가 되었는가		
응급 사항	아동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키트가 준비되었는가		
	직원 및 관계자는 응급상황별 대처요령, 의약품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의료시설, 경찰서 등 정보를 숙지하고 이를 공유하였는가		
안전 점검	행사장소에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는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사전답사 시 위험요인을 공유하였는가		
	아동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물질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낮은 구조물을 제거하였는가		
	아동(영유아)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지면은 안전한가		
	행사장 내 위험한 지역이나 공간이 있을 경우,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세워져 있거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가		
	행사장소에 강이나 조리대, 건축 현장 등 위험한 환경이 있는가		
	차량통제 및 위험구간이 상세하게 확인되었는가		
위생 안전	아동들의 간식 또는 음식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식수대, 화장실 등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가		

### 문화프로그램 사전 아동안전교육

#### 〈아동 준수 사항〉

- ①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한다.
- ② 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③ 교육 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④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에는 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 ⑤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⑥ 일정표에 따른 규칙적인 단체생활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 활동은 삼간다.

#### 〈교통 안전 사고 예방〉

- ① 승·하차 시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한다.
- ② 모든 차량에는 반드시 교사가 1명 이상 동승하여 차내 질서, 안전, 청결에 대한 지도를 한다.
- ③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 ① 인솔책임자 및 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인솔책임자 및 교사는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 ③ 사고 수습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상부 기관에 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한다.

#### 〈야외활동 시 성폭력 예방〉

- ①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성인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거절하거나 인솔 교사에게 알린다.
- ② 반드시 친구 여럿이 또는 모둠별로 다니며 혼자 다니지 않는다.
- ③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인솔 교사에게 알린다.

#### 〈폭력예방 교육〉

- ① 체험활동을 할 때에는 평소와는 달리 친구들이 예민해질 경우가 있으니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 ② 서로 불편한 사항이 생길 때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조언을 구한다.
- ③ 활동 중인 다른 친구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선생님에게 즉시 알린다.
- ④ 폭행, 감금,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휴대폰 사용) 등 어떠한 형태의 폭력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관한 점검 사항〉

- ① 프로그램 진행 전 아동 개별 증상(기침, 인후통, 발열 등)을 확인하고 체온을 체크한다.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 방역 수칙에 따라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 ②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한다(손소독제, 마스크 여유분 준비)
- ③ 프로그램 장소 선정 시 사람이 많고 밀접 접촉하기 쉬운 밀폐된 장소는 피하며, 식사와 간식 섭취 시 단독으로 구성된 장소를 이용한다.
- ④ 프로그램 시행 전, 아동들에게 전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양식

(프로그램명) 결과보고서

프로그램명 :

목적 :

세부목표 :

- 가.
- 나.

1. 세부 추진계획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 총 명(참가아동 : 명 / 참가성인 : 명)

프로그램 진행 내용

진행 내용	
소감 및 평가	
활동 사진	

예산진행내역 : 금일백십만천백원정 (₩0,000,000)

내역	단가	수량	금액
총계			

2. 아동안전보호 관련 평가

단계	위험요인	평가내용	비고
기획	아동의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및 관련 유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였는가?		
실행	실행하면서 사전 점검이 적절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모니터	아동안전보호 관련하여 이후 반영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2 상담 및 치료

• 목적

-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가 목적임
- 학대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심리평가와 상담을 제공하여 학대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 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역할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라 함은 심리상담사 혹은 심리치료를 말함
  - 학대로 인한 외상,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이차 외상의 경험을 가진 아동이 쉼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육사, 아동과 관련된 지지체계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제한적인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며, 아동의 내적 역동, 운동기능, 사회·정서, 의사소통, 적응영역을 평가하고, 개별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을 진행함
  - 쉼터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사와 일상과 치료 장면을 공유하고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함
- TIP ADHD 아동 정의와 특성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특성

1) 임상심리치료 과정

① 초기면접

- 목적 : 초기면접을 통해 심리평가(검사) 및 상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심리평가(검사)도구 및 상담의 목적 등을 결정하기 위함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피해아동의 어려움, 가족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나 치료에 동의한 피해아동과 보호자, 학대행위자를 대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 상담원 및 학대아동쉼터의 담당 보육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서식 : 초기면접지

**초기면접지**

초기면접일시	20 년 월 일(요일) : ~ :		
초기면접자	(인)		
이름(성별)		사례번호	
생년월일		만 나이	만 세 개월
학력	학교	학년 (재학, 졸업, 유예, 자퇴)	

**초기면접 의뢰 사유**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 여부, 동거여부 등 기록)

**가정 상황**

가족 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가정	<input type="checkbox"/> 편부가정(사별)	<input type="checkbox"/> 편부가정(이혼)	<input type="checkbox"/> 편부가정(가출)			
	<input type="checkbox"/> 편부가정(별거)	<input type="checkbox"/> 편모가정(사별)	<input type="checkbox"/> 편모가정(이혼)	<input type="checkbox"/> 편모가정(가출)			
	<input type="checkbox"/> 편모가정(별거)	<input type="checkbox"/> 미혼부가정	<input type="checkbox"/> 미혼모가정	<input type="checkbox"/> 미혼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친부 + 계모	<input type="checkbox"/> 친모 + 계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보호	<input type="checkbox"/> 친부 + 동거녀			
	<input type="checkbox"/> 친모 + 동거남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입양가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시설보호(기관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족 관계	성명	관계	나이	종교	학력	직업	동거여부
가계도							
가족력	(가족형성/해체 과정, 부-모의 관계 변천사,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와의 관계, 가족병력 등)						

**보호자 특성(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성격및기질문제	<input type="checkbox"/> 어릴적학대경험	<input type="checkbox"/> 알콜남용	<input type="checkbox"/> 약물남용
<input type="checkbox"/> 신체질환및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및장애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은아동	<input type="checkbox"/> 부적절한양육태도
<input type="checkbox"/> 양육지식및기술부족	<input type="checkbox"/> 부부및가족갈등	<input type="checkbox"/> 성문제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고립	<input type="checkbox"/> 경제적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폭력	<input type="checkbox"/> 존속학대
<input type="checkbox"/> 전과력	<input type="checkbox"/> 종교문제	<input type="checkbox"/> 도박,게임중독	<input type="checkbox"/> 특성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 ( )

**아동 특성(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거짓말	<input type="checkbox"/> 반항, 충동, 공격성	<input type="checkbox"/> 도벽	<input type="checkbox"/> 가출
<input type="checkbox"/> 약물	<input type="checkbox"/> 흡연	<input type="checkbox"/> 음주	<input type="checkbox"/> 인터넷(게임)중독
<input type="checkbox"/> 성문제	<input type="checkbox"/> 주의산만	<input type="checkbox"/> 과잉행동	<input type="checkbox"/> 늦은귀가
<input type="checkbox"/> 불건전한 또래관계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기피(은둔형 외톨이)		<input type="checkbox"/> 학교부적응
<input type="checkbox"/> 잦은결석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피해자(왕따)	
<input type="checkbox"/> 불안	<input type="checkbox"/> 애착문제	<input type="checkbox"/> 무력감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낮은자존감	<input type="checkbox"/> 신체발달지연	<input type="checkbox"/> 언어문제	<input type="checkbox"/> 학습문제
<input type="checkbox"/> 대소변문제	<input type="checkbox"/> 성격및기질문제	<input type="checkbox"/> 위생문제	<input type="checkbox"/> 틱(음성/신체/뚜렛)
<input type="checkbox"/> 급(만)성질병	<input type="checkbox"/> 영양결핍	<input type="checkbox"/> 탐식및결식	<input type="checkbox"/> 특성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문제력 (대상자의 문제행동이 최초 나타난 시기,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자/아동의 반응 등)

치료를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아동의 특성 ( )

**생육사**

임신	(약복용, 임신 중 발생질환, 입덧, 심리상태, 계획임신여부, 임신에 대한 주변반응, 분만형태 등)
수유 및 식사	(수유방법, 숟가락질 시기, 식습관 등)
대소변	(대변 및 소변 가린 시기, 대소변훈련시 어려움, 대변상태-정상·변비·유분 등)
수면	(잠투정 유무, 잠투정 시기, 수면시 특이사항 등)



발달사	
신체발달 사항	(목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걷기, 뛰기 등)
언어발달	(옹알이시기, 첫말단어, 현재 언어수준, 언어유실 등)
사회성 발달	(눈맞춤, 낮가림,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낯선사람과 상호작용 등)
시기별 주양육자	
교육사	
학령전 교육	(가정내 교육,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외부교육 등)
학령기 교육	(학습수준, 좋아하는 활동 또는 과목, 싫어하는 활동 또는 과목, 성적 등)
건강정도	
질병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질병명 : )	
장애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장애명 : 장애 급)	
병원치료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회/ 병력 :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통원 / 총 년 개월)	
정신과진단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진단명 : / 약물복용여부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총 년 개월))	
타기관상담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상담사유 / 회/ 기간 총 년 개월)	
대상자 태도 및 관찰내용	
면접자소견	
(○○학대피해아동센터)	

## ② 심리평가(검사)

- 심리치료전문인력이라 함은 심리상담사 혹은 심리치료사를 말함
- 학대피해아동의 사고, 심리, 성격 및 대인관계 등을 파악하여 사례판정 또는 사례개입 방향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함
- 심리평가(검사)를 통해 심리치료 목표 수립과 적합한 심리치료의 종류를 결정하고, 심리치료를 통한 대상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근거로 활용함

### • 실시

- 초기면접을 통해 결정된 심리검사도구(척도)를 활용하여 사전검사 실시
- 대상자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종합심리검사(Full Psychological Evaluation Battery)를 실시하고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검증된 심리검사도구를 선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결과

- 심리검사보고서 작성 후 시설장 보육사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서식 : 심리평가보고서
- 서식 : 심리검사보고서

## ③ 심리치료

-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 치료를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

### • 계획수립

- 사례개입 현황 및 초기면접지, 심리평가보고서, 사례회의 결과 등을 근거로 심리치료 계획 수립(사례개념화)
- 심리치료 계획에는 아동의 특성 및 현실적 여건(아동 보호조치 상황, 아동의 심리상태), 학대 행위자의 특성(상담명령 받았는지 여부,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하여 심리치료의 종류와 회기(기간)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심리치료 진행 중이라도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욕구에 맞게 심리치료 방향 및 목표를 재설정하고 필요시 계획을 재수립해야 할 수 있음

- 서식 : 사례개념화

• **심리치료 실시**

- 심리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심리치료의 구조, 대상,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심리치료의 종류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상담을 연계하여 진행함
- 심리치료일지 작성 : 치료일시, 장소, 치료목표, 치료내용 등을 포함하여 심리치료일지를 작성하고 치료사가 서명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 상담원, 쉼터의 시설장, 보육사 등으로부터 사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여 심리치료과정에 반영하고, 심리치료 과정 중 나타난 변화, 의미 있는 주제, 추가정보 등을 공유하여 이동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주기적인 심리치료 사례회의를 통해 심리치료 경과에 대해 공유하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야 함

• **심리치료 평가**

- 심리치료에 대한 중간 및 종결평가를 실행하고 심리치료 계획수립 시 설정한 치료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함. 이를 통해 치료의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심리치료 종결 여부 및 종결 시기를 결정함
- 심리치료 종결 이후 대상자의 심리 및 행동 변화를 확인하고 심리적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함
- 외부 전문가에게 개별적인 슈퍼비전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 슈퍼비전을 의뢰할 때 신고자와 치료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서류(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함. 필요에 따라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함

• **종결**

- 치료 평가란에 치료사가 치료시 나타난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변화 및 치료내용을 평가 기록함
- 심리치료 결과보고서 작성 : 종결 여부가 결정되면 치료 기간, 초기 설정한 목표, 치료 진행내용과 함께 치료에 대한 평가 등을 기록함
- 서식 : 심리치료동의서, 심리치료일지, 결과보고서

④ **상담 사례회의**

- (유관기관) 사례회의 : 필요시 아동별 사례개입, 목표, 재판 진행과정 등 공유
- (치료사 간) 내부 사례회의 : 상담 진행 점검, 시설장의 슈퍼비전, 동료 간 슈퍼비전 제공
- (보육사) 자체 사례회의 :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동의 내적 역동과 생활 장면 공유
- (치료사 + 보육사) 자체 통합사례회의 : 치료사, 시설장, 보육사가 모여 개별아동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통합사례회의 개최

⑤ **병원 연계**

-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하고 연계하도록 함
- 병원 연계의 경우 사례회의를 한 내용을 근거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선정
- 지역사회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하여 양육자 상담 지원
- 병원 일정, 진료내용, 약물 처방 등의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⑥ **국가아동학대시스템 입력**

- 입력 사항 : 심리치료일지 및 심리치료 결과보고서 내용 전부
- 초기면접지, 심리치료 동의서, 사전사후검사, 심리검사 보고서, 사례개념화, 심리치료 일지, 종결보고서 등

⑦ **외부기관 연계**

-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가능한 시설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하도록 함
- 협력 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협력기관 부합도 체크리스트

	구분	현재상태	사후조치
1	협력기관은 아동권리, 비차별,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협력기관은 다른 협력기관과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협력기관은 해당 사업영역 혹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협력기관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명확하게 정의된 사업 대상자 그룹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협력기관은 관련 영역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협력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현장에서 사업수행과 사업관리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8	협력기관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조직 차원에서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9	협력기관은 합의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0	협력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1	본 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경우, 협력기관은 투명한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협력기관은 우리 기관의 아동안전보호정책 준수 의무조항을 이해하고 가까이 동의의사를 표시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3	협력기관은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심리평가보고서

## 심리평가 보고서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만 세 개월)
학력	학교	학년 (재학, 졸업, 유예, 자퇴)		
평가날짜				

의뢰사유

---

실시한 검사

---

검사 태도와 행동

---

심리평가결과

---

평가자 소견

---

평가자 : (임상심리 자격명칭 및 번호) \_\_\_\_\_

---

(○○학대피해아동쉼터)

심리검사보고서

**심리검사 보고서**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만 세 개월)
학력	학교	학년 (재학, 졸업, 유예, 자퇴)		
검사날짜				

의뢰사유

실시한 검사

검사 결과

검사자 소견

검사자 : (검사자 자격 명칭) \_\_\_\_\_

(○○학대피해아동쉼터)

사례개념화

**사례개념화**

case conceptualization

내담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내담자 특성	의뢰사유					
	내담자의 특성		행동적, 정서적 특징 등			
주 호소 및 핵심 문제에 대한 가설	내담자의 주 호소					
	핵심문제		초기면접, 심리검사 등을 바탕으로 파악 요망			
	파악 된 핵심문제의 원인 혹은 강화요인					
치료목표	장기목표					
	구체적 단기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치료계획	치료유형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치료기법		정신분석, 인간중심, 해결중심치료 등			
	예상 치료기간					
	예상 치료 회기 수					
	상담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심리치료동의서

**심리치료 동의서**

내담자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개월)
--------	----	------	------	---------------

**심리치료** 심리치료는 심리치료를 신청한 본인(이하 내담자)이 심리치료 전문능력을 갖춘 치료사에게 현재의 어려움이나 도움 받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치료사와 내담자가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내담자는 적극적으로 상담과정에 참여할 때 상담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구조** 심리치료는 주 회 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치료내용의 보관** 심리치료의 내용은 더 나은 심리치료를 위한 슈퍼비전, 사례회의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 및 녹음(녹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내용은 기관 내에서만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자 상담 시 구두설명으로만 제공됩니다. 단, 내담자가 위급상황(자살, 자해 또는 살해, 폭력과 관련된 위험 등)이라고 판단될 경우나 법령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지침에(수사기관, 요청 등)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2항, 제46조제2항제7호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6호,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 및 심리치료 내용을 수집, 이용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합니다.

위 사항들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심리치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내담자 \_\_\_\_\_ (서명)      치료사 \_\_\_\_\_ (서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심리치료일지

**심리치료일지**

작성일자 20 년 월 일(요일)      작성자 \_\_\_\_\_ (인)

성명	사례번호
치료일시 20 . . ( ) : ~ :	치료장소
치료유형	회기
회기목표	

**치료내용**

**치료평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심리치료결과보고서

**심리치료 결과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요일)

성명	(남, 여)	사례 번호	
치료 기간	20 . . ~ 20 . . (총 회기)	작성자	(인)
의뢰 사유 및 주소			
사전 평가			
치료 목표			
단계	회기	일시	프로그램 내용
초기	1		
	2		
	3		
중기1	4		
	5		
	6		
	7		
	8		
	9		
중간 소견	치료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 중간 평가 시기는 조정가능		

중기2	10		
	11		
	12		
	13		
	14		
	15		
	16		
	17		
말기	18		
	19		
	20		
21			
사후 검사			
치료종결 사유			
치료 평가 및 소견			

\*심리치료 전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 추가 작성 요망

# 퇴소와 사후관리

## 1 퇴소관리

### 1) 행정절차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 퇴소 시 협조사항 확인
  - 퇴소 유형에 대한 정보교환
  - 퇴소 유형 : 원가정복귀,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 퇴소 통고는 늦어도 2주 전이어야 함
  - 서식 : 아동 퇴소 시 업무매뉴얼과 점검사항

### • 서류작성

- 퇴소 시 쉼터 시설장 의견서 작성 제출
- 퇴소아동 확인서와 퇴소아동 인수인계서 작성
- 서식 : 퇴소아동 확인서, 퇴소아동 인수인계서

### • 종결사례회의 개최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종사자 참여 필수

### 2) 쉼터에서의 아동 퇴소 지원

#### • 퇴소 준비

- 아동을 면담하며 퇴소에 대한 설명
- 퇴소를 거부할 경우 상담 진행
- 시설 전원의 경우 옮겨가는 시설에 대한 설명
- 사전탐방 희망의 경우 시설과 연락하여 탐방 실시

#### • 퇴소 진행

- 퇴소 체크리스트 확인
- 아동 입소 시 소지했던 물품과 쉼터 물품을 함께 사진 찍어 기록으로 남김. 단 낡고 지저분한 것은 아동 동의 하에 처분해도 됨
- 물품 및 용돈 인수증 만들기
- 퇴소 준비 프로그램 운영
- <퇴소 확인서> 서명하기

#### • 퇴소사례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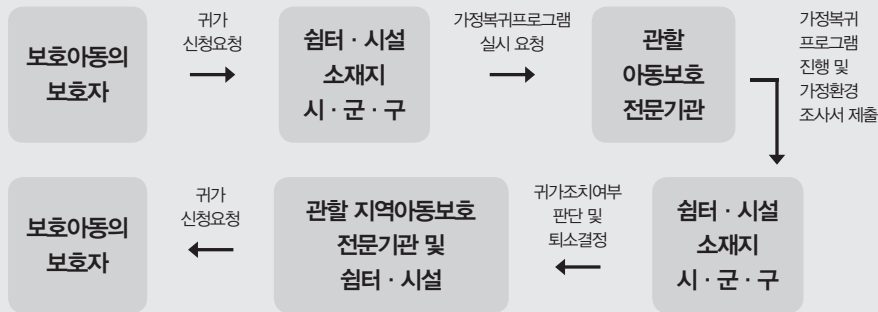
- 담당 아동보호전문요원에게 확인 서명 및 퇴소동의서 작성
- 행정기관에 퇴소 보고하기
- 시스템 등록하기

### 퇴소 처리 요령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 관할 시·도, 시·군·구에서는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아동복지법 제16조)
-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필요
  - 다만,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속 입소 가능
- 쉼터 퇴소 시기와 퇴소 유형(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전원)은 해당 사례를 관리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간 협의 통해 실시
  - 특히 퇴소 유형이 원가정복귀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가정복귀 절차(양육환경점검, 가정복귀프로그램 등)를 진행 하고, 관할 시·군·구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 등 관련 서류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 판단
  - 시설 간 전원, 보호조치 유형변경에 따른 퇴소 시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통해 실시
  -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보호조치된 피해아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의 종료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소견서를 제출받지 않고 법원의 결정문으로 갈음하여 퇴소처리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 실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과 함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근거로 입소되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퇴소절차 준용

- 지자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임시조치의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이 분리조치된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피해아동에 대한 추가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실시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대를 사유로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정복귀 신청을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을 관리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가정환경조사서와 당해 시설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으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출처 :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2 사후관리

### •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

-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임
- 아동의 전원시설 적응을 위하여 일시적 사후관리를 진행함. 전원 후 아동의 안위파악 수준
-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전화 또는 요청 시 방문

### • 사후관리 사례회의

- 주체 : 전원시설
- 참여자 : 전원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퇴소확인서 예시

### 퇴소확인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이제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항상 \_\_\_\_\_ 아동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 ① 개인 짐 정리를 다 하였나요?

- 옷장, 서랍장, 신발장에 있는 짐과 그룹홈에 맡겨둔 짐까지 잘 확인하였습니다.

#### ② 그룹홈과 관련한 기록은 다 삭제하였나요?

-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사진, 카톡 등을 다 삭제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③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전했는지요?

-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한 식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를 다 하였고, 퇴소 후에 필요한 연락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과 하겠습니다.

퇴소일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이름 \_\_\_\_\_ (인)                      확인자 \_\_\_\_\_ (인)

(OO학대피해아동쉼터)



## 4 장

# 비밀보장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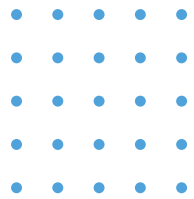
제1절 비밀보장

제2절 CCTV 관리

제3절 아동 안전

제4절 종사자 안전

제5절 질병(감염)으로 인한 위험상황 예방



**1 학대피해아동쉼터(비공개 시설) 내에서의 비밀보호<sup>7)</sup>**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소재지 시·군·구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보호조치 된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 등 지원, 협조(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가정폭력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정 내에서 친권자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가 발생한 피해아동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령 적용 가능)

**2 심리치료 진행 시 아동개인정보보호 내용 공유범위<sup>8)</sup>**

-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의무**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아동의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쉼터의 구성원과 관계자들에게도 아동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함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비밀보장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치료대상인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야 함
  - 쉼터 내/외부 사적 대화 등의 상황에서 아동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함

7) 보건복지부(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2

8) KYC(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 :

[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sub01\\_6.html](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sub01_6.html) | <http://www.counselors.or.kr/KOR/kca/law3.php>**• 심리치료내용의 공유범위**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아동이 위험상황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자살시도, 신체/성적 학대, 임신 등) 아동의 동의 없이 치료내용을 쉼터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상의 할 수 있고, 내부보고 후 상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아동이 심각한 비행(술, 담배 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미치는 것과 관련되는 정보(물리적/언어적 폭력, 협박 등)에 대해서는 아동의 동의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할 수 있음
  - ※ 1차적으로 시설장과 상의 후 아동의 정보에 대해 쉼터 내 종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 공유할지 결정할 수 있음
- 아동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비밀을 공개하여 그러한 위협의 목표가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 등 안전을 확보해야 함
- 아동에게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연계기관에서 아동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 치료 내용(회기, 심리척도 내용 등) 대신 간단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공유 가능함
-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서를 보내 아동의 치료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신청했을 경우 거부가 가능함. 하지만 해당 문서가 중요한 법적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법적 불이익의 위험이 있음
-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했을 경우, 촉탁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함. 만약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여타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를 통지해야 함

**🔍 아동 치료내용 공개 법적기준 1****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8조(불복신청)**

-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료 : 민사소송법

**🔍 아동 치료내용 공개 법적기준 2**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2조의 2(협력의무)**

- ① 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료 : 민사소송법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비밀보장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는 컴퓨터의 설정 및 다른 전문가(슈퍼바이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아동 치료내용 공개 기준**

- 아동이 제 3자에게 폭력의 위협을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아동의 폭력행위가 예측 가능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아동의 폭력행위가 임박하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잠재적 희생자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3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

- 개인정보열람자의 개인정보에 불필요한 접근을 하지 않으며,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문을 통해 주고받아야 함
-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함
- 아동의 사진을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개인 휴대전화 사용 후 2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함
- 사무용 컴퓨터는 잠금설정을 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아동의 개인정보는 아동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홍보, 촬영, SNS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의 보호되어야 함
- 이에 기관 내 모든 활동에서 취득한 아동의 개인정보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적절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자료”, “2020 보육사업안내” 부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며, 아래의 내용은 미디어 활용과 SNS에서의 아동안전보호 원칙을 중심으로 작성함
  - ※ 미디어 :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로 우편, 소식지, 리플릿, 브로셔, 사업보고서, 신문, 방송 등을 포함함
  - ※ SNS : 온라인 상에서 타인과 소통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해피빈 등을 포함함

#### 4 SNS에서의 아동안전보호원칙

##### 1) 사전 동의

- 아동으로부터 정보수집 혹은 사진촬영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아동을 촬영할 때 지역사회 주민들, 아동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촬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아동으로부터 정보수집 혹은 사진촬영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때는 예외로 적용 가능함
- 아동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보안상 우려나 법적 제약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2) 비밀보장

- 개인 SNS를 통해 아동정보 혹은 민감 정보, 기밀정보를 공유하지 않음

##### 3) 위치정보

- 아동 혹은 기관 사업 활동 지역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정보 공개로 인해 아동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 4) 정보노출주의

- 아동사진, 이름, SNS 계정 등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아동의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기관 휴대전화와 장비로 사용해야 함.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것을 권고함
- 개인 휴대전화로 사용할 경우 촬영 후 회사 PC로 옮겨 저장하고 개인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은 바로 삭제해야 함

## 제2절

# CCTV 관리<sup>9)</sup>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법 제25조 제1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 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법 제3조 제1항)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9)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21).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됨(법 제25조 제2항)

※ 따라서 쉼터 내 거실이나 주방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

**A** 어떤 목적으론 화장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외부에 설치하였더라도 화장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의 내부가 촬영되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2 임의조작·녹음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법 제25조 제5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음(법 제25조 제5항)

**Q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줌(Zoom) 기능이나 촬영 방향 전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가?**

**A**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목적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당초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제3절

# 아동안전

## 1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 1)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의 필요성

- 쉼터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쉼터의 특성에 따른 아동안전보호 규정과 행동강령이 필요함

### 2)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예시<sup>10)</sup>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착취, 방임 등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
  - 아동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관하지 않는다
  -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접촉 혹은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아동의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 온라인, SNS 등에 아동 정보나 이미지를 노출하지 않고, 아동이 등장하는 부적절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보지 않는다
  - 아동이 아동학대 위험이 있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이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 우리의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비한다
-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언어, 연령,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아동 고유의 의존성과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악용하지 않는다
  - 아동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태도, 언어, 표정 등으로 인해 아동이 모욕감이나 경멸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한다

10) 세이브더칠드런 내부규정 내용 참조

- 의도적으로 특정 아동과 그 가족을 활동에서 배제시키거나 편애하지 않는다
- 쉼터 관계자와 수혜자, 아동과 성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을 남용하지 않는다
- 아동과 그 가족을 정중하고 진실하게 대한다
- 아동이 개성(individuality)과 특별함(uniqueness)을 가진 독립적인 주체로서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신중히 받아들이며,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 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에게 아동권리를 알리고 아동 스스로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권리 침해 상황 혹은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이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조치에 대해 아동과 함께 논의한다
  -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지 않으며, 아동의 자신감(Self-confidence)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 (심리적, 물리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 아동을 만나는 경우 아동과 단둘이 있지 않고 상급자 혹은 동료와 동행한다. 만약 단둘이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아동이 항상 보일 수 있고 아동의 말이 잘 들릴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한다
  - 아동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으며 아동이 원하는 경우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아동이 업무상 필요한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
  - 아동 참여 활동에서 위험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동이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을 위한 별도의 방을 제공하고 아동과 단둘이 밤을 보내지 않는다
-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아동에 대한 사진촬영, 개인정보 수집, 수집된 정보와 이미지의 사용에 있어 아동의 사전동의를 받으며, 사용 동의 기간 이후 폐기한다
  - 수집된 아동 개인정보와 이미지를 개인 SNS 등에 게재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아동안전을 위해 아동 이미지, 이름, 위치정보를 동시에 노출하지 않는다
  - 개인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아동 이미지,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아동이 있는 곳 혹은 기관에서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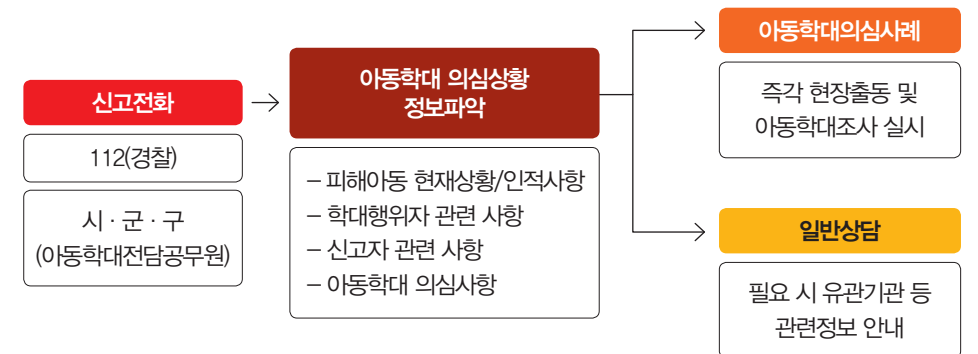
- 음주운전, 마약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술, 담배 등 유해한 물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장소나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아동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아동안전보호정책 준수를 위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 아동안전보호정책 위반 혹은 의심정황이 보고되지 않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며, 알게 된 즉시 보고절차에 따라 알리고 관련자 외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한다
  - 정기적으로 아동안전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고 제도, 규정, 절차, 관행 등의 보완을 검토한다
  - 쉼터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동안전보호정책과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을 알린다
- 아동안전보호정책 위반 혹은 의심정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한다

## 2 아동안전보호 위반 및 위험발생 시 내부 보고/대응

### 1)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내부 보고/대응의 필요성

- 쉼터에서 사건 발생 후 일반적으로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음과 동시에 쉼터 내부적으로도 대응체계를 통한 사건 인지, 보고, 대응이 필요함

[그림 4-1] 신고접수 주요 업무 흐름도



자료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1

## 2) 위험발생 시 내부 보고/대응 절차 예시<sup>11)</sup>

- 아동위험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대응 방법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

### 가. 사건인지

#### • 아동안전보호 위험 상황 발생

- 쉼터 내부의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등 안전규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진행 시 협력기관에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 쉼터 종사자 또는 쉼터 관계자가 아동안전보호 규정 위반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아동안전보호담당자 혹은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아동개인정보를 어떠한 경로로든 유출하는 경우

#### • 아동학대 발생 및 의심상황 발생

- 쉼터 내·외부의 관계자가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학대)를 아동에게 행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
-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인지한 경우

#### • 기타 아동안전사고 발생

- 아동 간 다툼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기관 내 안전 부주의로 인해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등·하원 또는 기관으로 이동 시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자연재해 및 생활안전사고 등

### 나. 사건보고

- 사건을 인지한 경우, 쉼터의 아동안전보호담당자나 시설장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아동 위험 의심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내용을 기록해야 함

11) 세이브더칠드런 내부규정 내용 참조

- 아동안전위험상황이 위급하거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의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112신고, 병원이송 등) 하며 사건접수 보고는 내부 보고 시 활용함

#### • 사건보고서 작성 (내부 보고 시)

- 아동학대 발생 시 사건접수 보고서는 내부 보고 시 활용함
- 아동의 상태, 피해 정도, 안전을 확인하고 잠재 위험성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함

#### • 사건보고회의

- 아동안전보호 규정 위반사항 또는 외부관계 기관 신고 및 조사의뢰 여부 등의 내용을 결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회의를 진행해야 함

### 다. 사건대응

#### ① 쉼터 내부자에 의한 발생 시

- 내부자에 의해 아동안전보호 규정 위반 혹은 아동학대상황이 발생한 경우, 쉼터 내부회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 • 주요 사안 파악 내용

-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에 대한 추가위험상황 확인
- 아동위험 재발 가능성 등

#### ② 쉼터 외부자에 의한 발생 시

-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함

#### ③ 가해자 없이 아동위험상황 발생 시

- 아동 간 다툼, 쉼터 내 안전사고 등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에



도 센터 내부 아동안전보호 보고대응 절차에 따라 처리함

#### ④ 주요 대응 방법

##### • 아동의 안전한 보호조치

- 아동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치료를 하고, 육안상 발견되기 어려운 곳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함
- 성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경찰에 즉시 신고함
- 아동의 위험상황을 인지한 후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알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유출됨을 알려야 함

##### • 외부 관계기관 신고

- 가해 혐의자가 직원, 관련자, 협력기관 종사자인 경우 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함
- 조사 또는 내부조사 보장, 신고자 노출 예방을 위해 가해 혐의자에게는 의심을 받고 있다거나 신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

##### • 외부 관계기관 조사 시 협조

- 아동안전보호 규정 위반 및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안전보호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라. 사건종결

### 3 아동안전보호를 위한 인사채용

직원과 센터를 대표하는 관련자의 채용 및 선발 과정에 범죄경력조회 등 아동과 함께하기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한 채용 절차를 적용해야 함

#### 1) 채용공고

##### • 공고문

- 직원 채용 시 공고문에 아동안전보호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모든 지원자, 특히 아동접촉, 대면하는 업무지원자에게 채용절차과정의 아동안전보호규정의 내용을 안내해야 함

##### • 채용공고문 예시

- ○○센터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에 편견이 없으며, UN아동권리협약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안전보호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우리 기관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실 분들과 함께 일합니다<sup>12)</sup>

##### •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에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책무를 명시해야 함

##### • 직무기술 예시

- 상기 업무는 아동과 정기적으로 대면하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입니다. 채용면접 절차에 이에 관한 이력과 경험을 묻는 질문 및 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NGO명)의 아동안전보호정책과 관련하여 확인 결과에 따라 채용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sup>13)</sup>

##### • 개인정보수집 동의

- 지원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는 필수로 받아야 함

12) 세이브더칠드런 2020 아동안전보호담당자 업무매뉴얼

13) 세이브더칠드런 「새움지역아동센터」 채용공고



## 2) 서류 확인

### • 자격요건 확인

- 채용공고에 따라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함

### • 증빙서류 검토

-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함

## 3) 면접진행

### • 면접위원 구성

- 면접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2인으로 진행하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함

### • 면접 시 확인사항

- 지원자의 경력 중 근무단절이 있을 경우, 그 기간과 사유를 파악하고 아동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없었는지 면접관 전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파악해야 함
- 지원자의 경력 중 아동범죄경력자로 의심될 경우, 면접관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이전 직장에서 징계처분 경험이 있을 경우, 정황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이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함

## 4) 범죄경력조회

### • 채용이 결정된 모든 사람은 입사 시 아동학대,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함

-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가 가능함

- 자원봉사자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내부 논의 후 대체 방법을 마련함

※ 예. 범죄경력 유무 확인서

## 5) 선발 및 아동안전보호교육 실시(필수)

• 최종 선발 이후 시설장과 아동안전보호담당자는 센터의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에 대해 교육하고 체벌금지 및 아동안전보호 이행확약서 서명 후 제출함

•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최소 연 1회)

## 4 아동참여활동 진행 시 아동안전보호

• 아동참여활동을 실행함에 있어 아동의 안전은 매우 중요함. 하지만 아동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아동참여활동을 강행하지 않도록 하며, 활동 전에 센터의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대응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아동참여의 정의

- 참여란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변화를 이루는 것을 말함. 아동참여는 참여 중에서도 아동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의 과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아동들의 자발적인 관여를 뜻함

※ 모든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 [자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참여프로그램 가이드라인 2013]

### • 아동참여활동

- 아동참여권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중 하나임. 아동은 참여활동을 통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생존·보호·발달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

※ "모든 놀이와 활동은 영유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유아의 자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의 주체가 영유아임을 인식하고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놀이와 활동을 이끌어나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자료.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1-3 놀이 및 활동지원]

※ "아동의 센터 운영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자치회 운영을 확인한다"[자료.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

### • 아동참여활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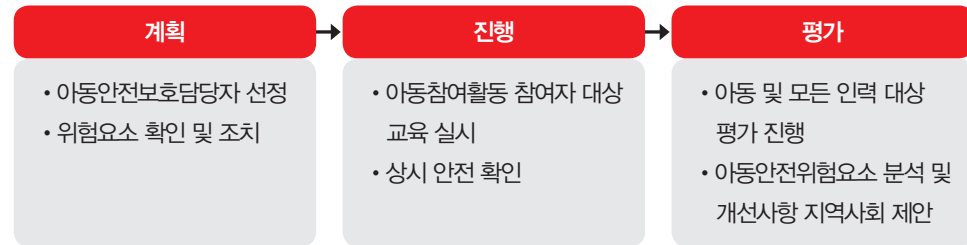
구분	아동참여활동
지역아동센터	아동자치회, 정서지원프로그램, 아동보호프로그램 등
어린이집	실내외 놀이 활동, 특별활동, 발표회, 부모참관수업 등

자료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보호정책 실행 가이드

### • 아동참여활동 시 아동안전보호 적용

- 아동참여활동에 있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조금이라도 안전에 우려가 된다면 절대 아동참여활동을 승인 또는 강행하지 않음. 아동참여활동 전에 아동안전보호규정에 의거하여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아동참여활동 시 이동위험요인 점검 절차 예시



자료 : 세이브더칠드런 2020 아동안전보호담당자 업무매뉴얼

아동참여프로그램 계획 예시

① 아동안전보호담당자 선정 및 역할

- 사업 담당자와 별도로 아동참여활동 전반에 걸쳐 아동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함
- 센터 내부의 아동안전보호 행동강령 등의 규정을 숙지하고 참여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안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으로 지정함
- 활동안내서에 아동안전보호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함

② 위험요소 확인

- 위험요소 확인 담당자 : 아동안전보호담당자
- 위험요소 확인 방법
  - 아동이 집에서 출발하여 활동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각 상황별로 점검함
  - 사전답사를 통해 아동참여 행사 사전답사 현장 점검표 확인 후 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대응 계획 점검표를 작성함

제4절 종사자 안전<sup>14)</sup>

1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

- 센터는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센터는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피해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2 환경구성

- 센터 내부의 인원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던지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함
- 센터 내 거실, 주방 등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함
- 사용하지 않는 공간 등은 아동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함
-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 공간을 마련해야 함

14) 서울사회복지사협회(2019). 2019 위기대응매뉴얼.

### 3 종사자 위기상황별 대응

#### 1) 신체적 폭력 : 실제적 공격, 공격 시도 등

##### ◆ 신체적 폭력의 정의

- 신체적 폭력은 이용자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신체적인 공격과 공격 시도를 하는 것이다.
- 실제적 공격은 이용자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종사자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이며, 공격 시도는 이용자가 종사자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고자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체적 폭력은 경미한 수준(밀기, 멍살 잡기, 붙잡기 등), 중간 수준(뺨 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등), 높은 수준(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등), 치명적 수준(칼겨눔이나 찌름 등)을 포함한다.

##### • 대처방안

- 아동이 흥분하여 폭력적 신호를 보일 경우 폭력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거나, 손가락으로 지적하거나, 위협적인 표정과 동작을 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함
-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일 때 아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함(타임아웃, 동료동반 등)
-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발생 직후 쉼터 내의 다른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아동과의 1대 1 대처 상황을 피해야 함
- 폭력이 발생한 경우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히 아동을 제지하도록 해야 함
- 주변에 다른 아동들이 있을 경우 주변 아동들을 다른 공간(방, 심리치료실 등)으로 피신시켜야 함
- 폭력이 발생한 경우 전 직원이 상황에 개입하고, 아동을 제지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아동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함
- 폭력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상급자 및 시설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함

#### 2) 언어적 폭력 : 폭언 및 욕설, 협박, 위협, 비하 발언, 모욕 등

##### ◆ 언어적 폭력의 정의

언어적 폭력이란 종사자를 언어적(정서적)으로 면전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괴롭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종사자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협박하는 것, 종사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하는 위협 등이 포함된다.

##### • 대처방안

-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감하되, 말이나 행동에 간단명료하게 반응해야 함
- 최대한 아동을 자극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끌어야 함
- 최대한 언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고 흥분상황일 때 농담이나 유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아동이 감정적으로 종사자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위협을 주려고 하면 개입을 진행하지 말고 중단해야 함
- 화가 나거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며 공감하되 폭력적 언어와 행동 등을 용인하지 않아야 함
- 폭언, 고성, 욕설, 협박 등을 중단할 것을 부탁하고, 이러한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는 등 아동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유도해야 함
- 아동이 폭언을 지속한다고 하여, 욕설, 큰소리 등으로 절대 맞대응하지 않아야 함

### 4 종사자 안전망

##### • 심리적 지원

- 양육스트레스 소진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법적 지원

- 쉼터에서 아동 보호 역할(보호자 동의, 백신 접종 등)을 하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 각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이 가능함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제5절

# 질병(감염)으로 인한 위험상황 예방<sup>15)</sup>

### 1 감염의 정의

#### • 공기감염

-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환자의 몸 밖으로 나온 병원체가 일정기간 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면서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갈 만한 크기인 비밀핵이 되어 공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결핵, 수두, 홍역, 파종성 대상포진 등)

#### • 비말감염

- 기침, 재채기, 대화 중 튀어나온 파편이 입자가 커서 공기 중에 떠 있을 수는 없으나 가까운 거리(보통 1m 이내)내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수막염, 폐렴, 백일해, 풍진, 인플루엔자 등)

#### • 접촉감염

- 직접접촉 : 직접적인 피부 혹은 점막의 접촉을 통해 미생물이 직접 옮겨가며, 환자의 체위변경 활동이나 목욕, 혈압/체온 측정 및 드레싱 등 간호 활동이나 환자와의 직접 접촉(악수 등)을 통해 서도 발생  
- 간접접촉 : 환자 주변 물품이나 부적절하게 살균/소독 처리된 의료기기 등 매개 물체에 미생물이 옮겨져 있다가 다른 사람이 접촉하여 전파(분변에 의한 이질/로타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 A형간염, 감염성 급성설사, 머릿니/웬)

### 2 대처방안

- 비누로 손을 씻고 알코올 손 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소지하여 활용한다.
- 감염될 위험이 있는 이용자를 만날 때는 보호장구(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감염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 임신 전 가임기 여성 및 임신한 종사자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풍진, 수두 등)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 감염의 염려 또는 의심이 있으면 기관에 보고하고 의료적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 종사자의 감염 확진(의심)되었을 때는 보호장구 착용 및 분리조치를 취한다.
- 감염 종류가 이용자 및 다른 종사자에게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면 위기대응팀 중심으로 감염예방 및 조기 조치를 취한다.
- 필요한 경우 방역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관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15)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2019), 2019 위기대응매뉴얼.

## 5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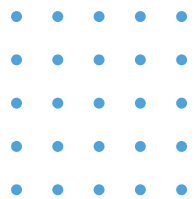
# 종사자 직무

제1절 종사자 교육

제2절 수퍼비전

제3절 종사자 근무 및 복지 가이드라인

제4절 Q&A



## 제1절

# 종사자 교육

### 1 직무교육의 목적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개념, 유형 등 기초지식을 학습함으로써 아동 중심 서비스를 실천하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
- 학대피해 아동과 쉼터 환경체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기술 이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아동 중심 사례관리 실천능력을 함양
- 학대피해아동쉼터 업무에서 필요한 지식과 심화된 기술 내용을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쉼터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현장사례에 적용

### 2 직무교육 대상과 과업

- 종사자 교육 대상은 시설장, 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임
- 교육 내용은 쉼터 종사자의 역할 이해와 준비, 쉼터 입소아동의 이해와 양육방법,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론, 쉼터 행정의 이해 등 쉼터 직무와 관련된 내용임

#### 가. 쉼터 종사자의 직무과업<sup>16)</sup>

##### 1) 시설장 직무

- 시설장 직무교육은 인사노무, 종사자교육, 인사평가, 아동보호와 양육, 아동상담과 치료, 행정, 자원관리, 윤리적 갈등상황 해결 등으로 구분

16) 자료 : 세이브더칠드런 산하 안산/울산 신나는 아동쉼터 운영 매뉴얼

〈표 5-1〉 시설장의 직무

직무	과업	목표	내용
조직	인사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채용과 배치</li> <li>• 종사자 교육, 근무환경, 안전 관리</li> <li>• 종사자 복지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채용 절차</li> <li>•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복리후생제도 적용과 실시</li> <li>• 종사자 교육과 욕구조사</li> <li>• 근무상황 등 근태관리</li> <li>• 종사자 휴가 등 복지</li> </ul>
	종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의무교육</li> <li>• 종사자 전문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종사자 교육</li> <li>• 법정 의무교육 참여 확인</li> <li>• 중앙과 지자체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독려</li> <li>• 아동학대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li> <li>• 종사자 소진 예방 교육 참여 독려</li> </ul>
	인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역량 강화</li> <li>• 종사자 경력과 업무성과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역량 향상 점검과 지원</li> <li>• 종사자의 업무경력과 평가결과 관리</li> </ul>
아동	아동보호와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발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입퇴소 절차 : 지역사회 자원 연계</li> <li>• 아동 초기 사례개입 계획 수립</li> <li>• 아동 프로그램 진행 확인</li> <li>•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제공</li> <li>• 아동안전과 사후 모니터링 논의</li> </ul>
	아동상담과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적 개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 아동 적응 프로그램 제공</li> <li>• 입소아동의 초기 진단과 평가 : 지역 의료 서비스 연계</li> <li>• 입소아동 치료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li> <li>•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치료개입 연계 확대</li> </ul>
행정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와 자원관리의 효율성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수립과 승인 보고</li> <li>• 후원금과 후원물품 관리</li> <li>• 외부자원 관리</li> </ul>
	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안전과 물리적 환경 개선</li> <li>• 쉼터 업무환경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의 특성에 따라 공간 분리와 배정</li> <li>• 공공근로 활용</li> <li>• 쉼터의 비품관리</li> <li>• 쉼터 시설운영과 관리</li> </ul>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금과 후원물품 확대</li> <li>• 지역 자원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욕구사정에 근거하여 자원 연계</li> <li>• 지역사회 후원 개발</li> </ul>
윤리	윤리적 딜레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딜레마 이론과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이해</li> <li>• 윤리적 갈등 사례 이해</li> </ul>

## 2) 보육사 직무

- 보육사의 기본 직무는 아동보호와 양육이다. 보육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의무교육과 문화체험 활동, 건강관리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입퇴소시 지원상담과 유관기관의 전문상담기관을 연계
- 그 외 행정과 윤리적 갈등 사례 해결 등의 직무 수행

〈표 5-2〉 보육사의 직무

직무	과업	목표	내용
아동 보호	일상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안정</li> <li>• 심리적 정서적 회복</li> <li>• 기본 생활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신체적 상태 확인과 위생관리</li> <li>• 아동의 의복, 식사, 간식 확인</li> <li>• 아동 수면, 생활습관, 약 복용 등 지도</li> <li>• 아동 보육일지 작성과 시스템 등록</li> </ul>
	입퇴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 적응 지원</li> <li>• 쉼터 생활 적응 관찰</li> <li>• 퇴소 준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 보고서 작성과 관련 업무 지원</li> <li>• 입소아동 규칙, 교육, 상담</li> <li>• 입소아동 적응과 안정을 위한 상담과 지속적 관찰</li> <li>• 아동 퇴소 지원을 위한 점검</li> <li>• 아동 퇴소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li> </ul>
아동 프로그램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 입소아동을 위한 의무 프로그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제공</li> </ul>
	문화 체험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욕구조사</li> <li>• 학대후유증 회복을 위한 문화체험 제공</li> <li>• 입소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문화적 체험과 활동에 대한 욕구파악</li> <li>• 아동중심의 문화체험 진행 : 어린이날, 명절, 성탄절 등</li> <li>•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체험 계획 : 놀이공원, 실내 놀이터 등</li> <li>•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 제공 : 여행, 캠프 등</li> </ul>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입소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진단</li> <li>• 응급상황시 아동 안전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신체발달 수준 확인: 소아과, 치과, 보건소 등 지역연계</li> <li>• 학대피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점검 등 정신건강 진단: 정신과, 상담실 등 지역연계</li> <li>• 응급상황 대처 방안 숙지와 처리</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학력평가</li> <li>• 아동의 학업수준에 따라 교육 지원</li> <li>•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발달수준을 파악하여 학습 지원 계획</li> <li>• 아동의 학습지도와 학교 일정 지원</li> <li>• 아동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교육 지원</li> </ul>

직무	과업	목표	내용
아동 상담	입퇴소시 지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 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li> <li>• 학교 등 일상생활 적응 지원 상담</li> <li>• 퇴소아동 준비를 위한 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 교육과 쉼터 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 계획과 진행</li> <li>• 쉼터 생활, 학교, 기타 외부기관 활동 등 아동생활과 관련한 상담</li> <li>• 퇴소준비를 위한 아동상담</li> </ul>
	유관기관 전문상담 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상담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에 전문상담을 의뢰하기 위한 정보제공</li> <li>• 유관기관 전문가와 협조</li> </ul>
행정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 결의서</li> <li>• 국가시스템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 결의서, 품의서 등 회계 보조 업무</li> <li>• 사회복지시스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국가시스템에 정보 입력</li> </ul>
	지역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학교, 유관기관, 공공기관 등 자원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의 적응, 사례관리, 프로그램 진행 등을 위해 외부 자원 연계</li> </ul>
윤리	윤리적 딜레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딜레마 이론과 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이해</li> <li>• 윤리적 갈등 사례 이해</li> </ul>

## 3)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직무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직무는 입소아동의 심리검사와 진단을 통해 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아동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면서 아동 사례회의에 참여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서비스를 제공
- 상담실 관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해결하는데 참여

〈표 5-3〉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직무

직무	과업	목표	내용
아동 검사와 진단	아동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 초기 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 검사 실시</li> <li>• 입소 초기 상담 자료</li> </ul>
	아동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의 정신건강 평가와 진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아동의 치료서비스 계획</li> </ul>



직무	과업	목표	내용
아동상담	아동 상담과 치료	• 아동 상담과 치료 계획 수립	• 아동 상담과 치료 서비스 제공 • 국가시스템에 아동상담 서비스 입력
	종사자 사례회의	• 아동 상담과 치료 목표 설정과 계획 공유	• 아동 상담과 치료 서비스 세부 계획을 공유 • 아동특성에 따라 개인상담, 집단 상담 진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기관과 결과 공유
외부 전문기관 연계	외부 상담 및 치료실 연계	• 아동특성에 따라 외부 기관과 협력	• 입소아동의 발달특성과 문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 연계 서비스 제공
	정신과 연계	• 아동 상황을 고려하여 약물 복용	• 아동의 상황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약물치료 고려
행정	상담실 관리	• 상담실 환경 관리	• 상담실 물품관리, 놀잇감 등 치료도구 관리
	업무 지원	• 심리치료 보고서 • 아동 프로그램 지원	• 입소아동 심리치료지원 사업 보고서 • 입소아동 퇴소 준비 지원 • 입소아동 참여 프로그램 지원
윤리	윤리적 딜레마	• 윤리적 딜레마 이론과 사례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이해 • 윤리적 갈등 사례 이해

## 나. 종사자 직무를 위한 기초내용<sup>17)</sup>

### 1) 아동발달 이해<sup>18)</sup>

#### • 아동의 특성

- 의존성 : 아동의 대표적인 특성, 아동 보호와 안전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사회의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 아동의 생명유지와 성장 발달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발달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미성숙 :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완성의 상태나 미성숙한 상태에 있음. 아동이 성인으로 성숙되기 위해 성장단계에서 지식, 기술, 행동방식 등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제공되어야 함
- 민감성 : 아동은 부모, 가족, 또래, 교사, 이웃 등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태도에 대해 민감한 편임. 아동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욕구에 대해 즉각적인 충족을 요구하며, 욕

구충족이 안될 경우 분노를 표출하거나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할 경우 불안감 형성이나 퇴행을 경험함

- 적응성 : 아동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 발달하는 존재이고, 가족, 교육, 지역사회로 적응하는 범위를 확장하게 됨. 아동은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인간으로 성숙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됨

#### • 아동발달 규칙

- 아동 본성과 양육의 영향 : 아동발달은 아동이 타고난 유전의 영향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양육의 영향을 모두 받음
- 연속성과 불연속성 : 아동발달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뚜렷한 발달단계를 보이기도 함
- 누적성 : 이전 발달이 다음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의 경험이 누적되어 다음 단계의 발달을 결정함
- 항상성과 변동성 : 아동의 신체적 특성(피부색 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신체 골격이나 기능은 변화함
- 순환성과 반복성 : 발달의 다른 시기에 유사한 발달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
- 가변성 : 아동발달의 영역에 따라 발달의 속도와 정도, 성숙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인차 : 모든 아동이 성장하는 발달속도와 정도가 같지 않음
- 문화성 : 시대나 지리적으로나 문화가 다르면 아동의 성장과 규범 등의 차이가 나타남
- 상호성 : 아동발달의 하위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영향을 미치며 발달하며, 환경과도 상호작용함

#### • 프로이드의 성격구조와 방어기제

- 원초아(id) : 성격의 본능적 요소, 쾌락 추구, 고통 회피, 인간의 선천적인 본능적 충동
- 자아(ego) : 성격의 이성적 요소, 현실 원리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갈등/협상/조정을 거쳐 원초아의 욕구 충족 또는 통제, 자아가 합리적으로 불안감을 대처하지 못할 경우 무의식적인 심리적 기제인 방어기제를 통해 해소
- 초자아(superego) : 성격의 도덕적 및 윤리적 요소, 사회문화적 규범이 내면화

17) 워터 종사자로서 입소아동 보호와 양육 관련 주제와 관련된 기초내용으로 신입 종사자를 위한 기초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18) 자료 : 배화옥, 김미숙, 이은주(2021). 아동복지론, 신정



## 방어기제

<b>억압</b>	수용할 수 없는 생각 또는 충동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거나 고통스러운 사실에 대하여 자동적이며 강압적으로 의식을 끄는 기제. 방어기제 가운데 가장 원시적이고 일차적인 형태를 취함. 억압된 충동은 말실수, 농담, 꿈 등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함
<b>억제</b>	자각하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눌러서 지우거나 참아냄(예 : 나쁜 짓을 하고 싶지만 적발된 후 받아야 할 징벌이나 손해를 생각해서 참는 것)
<b>합리화</b>	자신의 실수나 실패, 그릇된 판단에 대해 지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는 기제(예 : 여우의 신포도)
<b>반동</b>	억압된 무의식적 생각, 욕구, 충동 등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임(예 :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b>투사</b>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나 태도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림
<b>퇴행</b>	고통, 스트레스, 욕구불만, 갈등과 마주할 때 현재 성장단계 보다 이전 단계로 후퇴하여 불안 해결하려 함(예 : 동생을 본 만이의 행동)
<b>저항</b>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의식하지 않으려 함.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함(예 : 상담자의 질문 회피, 차후 상담 회피)
<b>부정</b>	욕구, 현실이 위협적이거나 불쾌하여 대면하기 어려울 때 부인하거나 거부함.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임(예 : 가족의 죽음을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다고 믿음)
<b>동일시</b>	자신의 생각, 태도, 사고방식을 어떤 대상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부정함
<b>보상</b>	고통과 불만이 발생하면 다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이를 피하려는 기제(예 :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
<b>승화</b>	방어기제 가운데 유일하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출. 공격성, 충동, 분노를 운동, 문학, 예술 등의 창조적 행동으로 표현함

## 2) 아동학대 이해<sup>19)</sup>

- 학대피해센터 종사자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양육과 치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개념과 유형, 징후 등에 관한 이론적 기초지식이 요구
- 특히 아동학대의 행동적 징후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등 개별 아동의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으로 활용

가) 아동학대의 개념 :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것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음

나)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
- 각 유형별 학대 내용, 구체적 행위 사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5-4>와 같음
-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의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고, 학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능력이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여 정확하게 피해상황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신체적 징후나 행동적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여 행동특성에 따라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

19)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arc.or.kr>)

〈표 5-4〉 아동학대 유형과 내용

신체학대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행위 사례**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심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구체적 행위 사례**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행동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성학대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행위 사례**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배뇨곤란
- 생식기의 대상포진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의 홍진(紅疹)
- 요도염

###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이 좁아짐
- 변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 행동적 징후

###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 방임

**내용**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구체적 행위 사례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신체적 장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 행동적 장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리<sup>20)</sup>

#### 가) 생존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6조는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의
- 생존권은 아동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영양급어를 받을 권리를 의미
  -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교육을 받을 권리
  - 집과 양부모를 가질 권리
  - 살아가는데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 나) 보호권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 방임, 차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규정
- 포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위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의 영향을 최소화

#### 다) 발달권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능동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는 발전에 대한 참여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정한 급여의 재분배에 대한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개인과 완전한 인간의 복지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으로 정의
-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각자의 발달단계와 능력에 따라 국가 및 부모와 책임자들로부터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정보서비스, 취업준비, 여가활동, 기회균등 등의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의사와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보건에 대한 권리
  - 적절한 영양 섭취의 권리
  - 사회적 안전과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

20) 국가인권위원회(기획), 황옥경, 구은미, 이은주, 김형욱 (2017), 아동청소년과 인권, 나눔.

-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 놀 권리
- 부모의 책임과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

라) 참여권

-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이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고 사상, 양심,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나 모든 사상과 정보들의 표현과 소통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며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가장 적극적인 인권의 영역이며 행위의 주체가 아동

4) 아동과의 대화방법<sup>21)</sup>

가)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 학대피해센터 입소아동들은 피해경험에 따른 심리적 후유증 등으로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센터 공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
- 입소아동을 양육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종사자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비폭력대화방법(Marshall B. Rosenberg, 2004, 캐서린 한 역, 2011)을 통해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

• 대화과정 4단계

- ① 관찰 :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
  - 아동의 말과 행동에 대해 평가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관찰한 바를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 관찰과 평가를 섞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은 내가 뜻한 말을 이해하기보다 비난으로 받아들여 저항감을 가지게 됨
- ② 느낌 :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았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
  - 마음이 아프다거나, 두려웠거나, 기쁘고, 즐겁고, 또는 짜증나는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
  - 느낌을 표현하는 말과 생각/평가/해석을 나타내는 말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함

21) 자료 : 유지향, 박선환, 정덕희, 박숙희, 우수경, 권현용(2017), 아동상담, 공동체

③ 욕구 : 자신의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 이야기

-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신을 탓하기, 상대방에 대해 거부감 느끼기,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잘 느끼고 표현하기,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잘 인식하고 표현하기를 할 수 있음
- 자신이 원하는 요구나 기대, 희망, 가치관, 그리고 생각을 인정하여 자신의 느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④ 부탁 : 관찰, 느낌, 욕구에 기반하여 아동이 행동하길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표현으로 제시

- 아동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긍정적이려 구체적인 행동언어로 부탁
- 모호한 표현은 듣는사람의 내면에 혼란을 일으키고, 단순히 느낌만을 표현하면 듣는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고,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 부탁은 명령처럼 들릴 수 있음

**비폭력대화의 핵심**

- 오해와 갈등을 없애는 '관찰'
- 얼었던 마음을 녹이는 '느낌'
- 이해와 공감의 연결 고리, '욕구/필요'
- 속마음을 주고받는 '부탁'

**이렇게 말해보아요!**

- ① ~할 때(관찰)
- ② 나는 ~를 느낀다(느낌)
- ③ 왜냐하면 나는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욕구)
- ④ 그래서 나는 지금 ~을 했으면 한다(부탁)

**사례** “○○아, ① 신었던 양말들이 뽁뽁 말려서 탁자 밑에 있고, TV 옆에도 있는 걸 보면(평가나 판단없이 관찰한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 ② 나는 짜증이 난다. (관찰한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 ③ 왜냐하면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좋기 때문이야.(느낌이 자기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이야기) ④ 앞으로 그 양말들을 화장실 빨래 통으로 가져가든지, 세탁기에 넣어줄 수 있겠니?”(구체적으로 부탁)

5) 아동 양육과 지도<sup>22)</sup> : 아동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도하는 감정코칭

- 쉼터의 양육환경을 통해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느낌, 태도를 통해 아동과 의사소통을 하게 됨
- 종사자와 아동의 의사소통은 아동의 쉼터 적응과 치료적 서비스 개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며, 서로 감정과 생각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아동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쉼터 아동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음
- 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지속되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되고 학대피해로 경험할 수 있는 불안감과 분노, 공격성 등 사회적 부적응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음

〈표 5-5〉 감정코칭의 5단계

단계	주제	내용
1	아동의 감정을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작은 행동이나 감정을 빨리 알아차린다.</li> <li>•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속에 숨겨진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 네 마음에 무언가 불편함이 있니?’, ‘지금 네가 보이는 행동에는 너의 마음도 함께 느껴지는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여 파악한다.</li> </ul>
2	감정적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경험이나 감정이 파악되었을 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로 삼는다.</li> <li>• 아동의 부정적 감정이 고조되어 위기상황으로 가기 전에 감정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받았다고 느껴야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li> <li>• 감정이 격렬해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위험부담은 적으면서 문제해결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li> </ul>
3	아동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경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모두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공감한다.</li> <li>• 아동 자신도 모르는 복합적인 감정도 있는 그대로 수용해준다.</li> <li>• ‘왜’라는 질문은 공감적 수용의 맥락을 차단하므로 최대한 하지 않는다.</li> <li>• 아동이 사용한 말의 형용사나 문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주면 효과적인 감정공감이 이루어진다.</li> </ul> <p>예 ‘오늘 학교 화장실에서 나를 따돌리던 다섯명의 아이들이 나를 에워싸고 비난을 하고 욕설을 하는데, 정말 화가 활화산처럼 났어요’ → ‘네가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 활화산처럼 났다니... 정말 힘들었겠다!’</p>

단계	주제	내용
4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스스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li> <li>•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충분히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li>•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객관화시켜 바라봄으로써 아동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li> <li>• 아동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화난, 슬픈, 두려운, 시샘하는, 모멸감이 느껴지는...’ 등처럼 단어를 제시하여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정의하고 자신 ‘감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li> </ul>
5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을 충분히 하여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li> <li>• 아동이 원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서 그 해결방법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 검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li>• 아동이 한두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시도하도록 지도하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효과가 없어도 스스로 분석하여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li> </ul> <p>예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투가 표정이 친구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찰 → 아동의 감정을 수용하고 아동의 말투나 표정 등을 변화시켜서 친구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해결방법을 이야기</p>

22) 자료 : 유지향, 박선환, 정덕희, 박숙희, 우수경, 권현용(2017), 아동상담, 공동체



### 3 종사자 교육

- 종사자 교육은 시설장, 보육사, 치료사가 이수해야 할 필수 의무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과 각 센터별 교육 욕구와 특성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심화교육으로 구성

#### 1) 직무교육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설장과 보육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직무교육으로 매년 교육명이 상이할 수 있음
- 2020~2021년 진행된 교육내용은 <표5-6>과 같음

<표 5-6>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예시

대상	시간(분)	교육명
시설장	110	학대피해아동 특성의 이해 및 대처
	90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업무처리 방법
	120	특수행동아동 사례의 수퍼비전
	120	2020년 개정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 해설
	50	학대피해아동쉼터 업무절차
	60	아동발달의 이해
	60	학대피해아동과 건강한 관계맺기 -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사례 중심으로
	50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의 사명과 윤리
보육사	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의 윤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해
	60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업무처리 방법
	120	청소년 자해 - 자살의 이해
	90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소통하는 방법
	90	학대받는 아동의 정신건강 이해하기
	90	아동, 청소년 성문제의 이해
	120	학대피해아동 특성 이해 및 의사소통 방법
	50	학대피해아동쉼터 업무절차 안내
	90	경계선지능아동 이해 및 대처방법
	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의 윤리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 내용은 <표5-7>과 같음.

<표 5-7>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대상 필수 의무교육 예시<sup>23)</sup>

우선순위 등급	교육명	근거	수강방법	이수시간
A	아동학대 예방교육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평생학습포털</li> <li>• 경기도 지식</li> <li>• 중앙교육연수원</li> <li>•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li> <li>•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i> <li>•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li> </ul>	연1회/ 1시간이상
A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평생학습포털</li> <li>• 경기도 지식</li> <li>• 중앙교육연수원</li> <li>•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li> <li>•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i> <li>•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li> </ul>	연1회/ 1시간이상
A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센터</li> </ul>	연1회/ 8시간
A	종사자 인권교육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li> <li>• 한국사회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배움인</li> </ul>	연1회/ 4시간
A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이버진흥평생교육시설</li> </ul>	연1회/ 1시간이상
A	(아동관련) 성폭력예방교육	아동분야 사업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li> </ul>	연1회/ 1시간이상
A	(아동관련) 안전교육	아동분야 사업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배움인</li> </ul>	연1회/ 1시간이상
A	(아동관련) 아동권리교육	아동분야 사업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li> <li>• 한국사회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배움인</li> </ul>	연1회/ 1시간이상
A	(아동관련) ADHD약물 오남용방지 등에 대한 교육	아동분야 사업안내	-	연1회/ 1시간이상

23) 자료 : 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교육가이드>

우선순위 등급	교육명	근거	수강방법	이수시간
A	(직장내) 장애인인식 교육	법령	• 50인 미만 시설 '간이교육'시행 가능 • 그룹홈협의회 원격교육	연1회/ 1시간이상
A	퇴직연금교육	법령	• 한국사이버진흥평생교육시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연1회/ 1시간이상
A	긴급복지지원 신고자의무자교육	법령	• 한국사회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배움인	연1회/ 1시간이상
A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령	• 한국사회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유튜브 교육영상	연1회/ 1시간이상
A	어린이시설 종사자안전 교육	법령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연1회/ 4시간이상
B	시설안전 관리교육	법령	• 한국사회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배움인 •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연1회/ 1시간이상
B	소방안전교육	법령	• 한국소방안전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연1회/ 2시간이상
B	노무교육	직무 교육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연1회/ 1시간이상
B	세무교육	직무 교육	•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자체교육	연1회/ 1시간이상
B	회계교육1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지침교육)	아동분야 사업안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연1회/ 1시간이상
B	회계교육2 (사회복지정보 시스템교육)	아동분야 사업안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	연1회/ 1시간이상
C	(산업)안전 보건교육	법령	• 한국사이버진흥평생교육시설	매분기/ 3시간이상

우선순위 등급	교육명	근거	수강방법	이수시간
C	성매매예방 교육	법령	• 한국사이버진흥평생교육시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연1회/ 1시간이상
C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령	• 한국사이버진흥평생교육시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	연1회/ 1시간이상
C	코로나대응을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교육	기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자료 활용하여 자체교육 진행	연1회/ 1시간이상

## 2) 심화교육

- 교육시간 : 개별 센터의 직원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시기 및 방법, 주제 선택 가능
- 교육주체 : 중앙과 지역의 유관기관에서 교육자/수퍼바이저를 섭외
- 교육내용 :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소진예방에 기여하고, 수퍼비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주제를 선택해서 교육 실시
- 온라인 수퍼비전 강사비 지급 기준에 기초하여 심화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음<sup>24)</sup>

〈표 5-8〉 강의 유형과 방식 및 강사비 기준

유형	강의 방식	지급 단가	비고
녹화형 강의	•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한 콘텐츠 •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콘텐츠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강사출연비 : 시간당 10만원 이내 ※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않음
실시간 라이브 강의	•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시간에 원격 강의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

24)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2년 배분사업 수행안내자료(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p. 31)



**1 수퍼비전의 목적**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통해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종사자의 전문성을 증진
- 쉼터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입소한 아동의 사례관리 서비스 질 제고와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
- 학대피해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수퍼비전을 통해 쉼터 운영의 효율성 강화

**2 수퍼바이저 선정 기준**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학대피해쉼터 운영, 아동 보육과 훈육, 아동상담치료 등 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수퍼비전을 제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쉼터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할 수 있음
- 내부 수퍼바이저 : 최소 3년 이상의 쉼터 시설장 또는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학대피해쉼터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실무 경력자로 위촉
- 외부 수퍼바이저 : 아동학대, 상담치료, 정신보건, 보육, 사회복지, 법률가 등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위촉

**3 수퍼비전 운영 체계**

- 쉼터 운영, 아동보육, 아동상담과 치료 등 분야별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수퍼바이저 pool을 구성
  - 전국 단위의 수퍼바이저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수퍼비전을 제공

- 지역 단위의 수퍼바이저는 각 지역별로 현장방문 등 현장에서 실무자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례의 수퍼비전을 제공
- 수퍼비전 분야를 세분화하여 아동보호, 아동상담과 치료, 행정과 조직관리, 사례관리 등 각 분야별로 수퍼비전 제공
- 쉼터에서 수퍼비전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즉각적으로 실시 가능

**4 수퍼비전 진행 절차<sup>25)</sup>****• 준비단계**

- 수퍼비전 분야를 결정하고 수퍼비전 요청계획서를 작성
- 수퍼비전 분야에 따라 수퍼바이저와 수퍼비전 유형을 결정

**확인하세요!**

- 수퍼비전의 의뢰 유형은 무엇인가요?
- 현장방문 등 실무자와의 논의가 필요한가요?
- 수퍼비전의 소요시간과 수퍼비전 횟수 등을 정례화 했나요?
- 수퍼비전의 달성목표 설정 등 요청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나요?

**확인하세요!**

- 수퍼비전 요청 계획서는 수퍼비전 시작 1주일전까지 수퍼바이저에게 전달했나요?
- 수퍼비전 사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개선이 어려운 장애사항(추가 자원 제공 제한, 조직 문제 등)을 확인했나요?
- 수퍼비전 이후 경과보고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나요?
- 수퍼바이저와의 회의시간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나요?
- 수퍼비전 회의내용과 적용결과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나요?

25) 자료 : 희망복지지원단 수퍼비전 체계 운영 가이드(2014)

수퍼비전 양식 사례<sup>26)</sup>

## 수퍼비전을 위한 상담 내용 보고서

수퍼비전 일시 \_\_\_\_\_ 상담자 \_\_\_\_\_

상담기간 및 진행된 회기 수(날짜)	
내담자 인적사항 (개인사, 가족관계, 포함)	
주호소 문제 (신청서 기재 내용, 심리검사 결과 포함)	
<b>사례 개념화 :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접근</b> <i>내담자의 문제, 증상의 원인 및 관련 요인 그리고 목표 설정과 전략에 대한 상담자의 견해</i>	
상담목표, 계획 및 전략	
슈퍼비전 받고 싶은 내용	

26) 자료 : 세이브더칠드런 운영 센터

• **진행단계**

- 수퍼비전 사례선정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수퍼바이저에게 의뢰할 사례와 관련하여 현장의 장애물 등을 점검
- 수퍼비전 회의 실시

• **종료단계**

- 수퍼비전 이후 개선사항 도출 등 달성목표와 성과 확인
- 수퍼바이저와 수퍼비전 내용 점검과 평가를 공유하여 이후 수퍼비전 운영에 반영

제3절

# 종사자 근무 및 복지 가이드라인

## I 근무제도

### 가. 근무시간

- 모든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
-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음(상시 5명이상 ~ 50명 미만,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sup>27)</sup>에 의해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

27)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종사자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sup>28)</sup>

### 근로계약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이하 “사용자”라 함) 근로자 \_\_\_\_\_ 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① **근로계약기간** : 2022년 1월 1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

②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 ○○학대피해아동쉼터  
단, 업무 및 근무장소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근무일 및 휴일**

- 근로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근무표에 따라 야간 → 오후 → 탄력근무 순으로 근무
- 탄력근무는 2주이내 탄력근로제
- 근무표 및 근무일과 업무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은 아래와 같음

1) 근무유형에 따른 근무일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후근무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주간	휴무	휴일
야간근무	야간	야간	야간	야간	야간	휴무	휴일
탄력근무	주간	휴무	휴무	휴무	휴일	탄력근무	탄력근무

28) 자료 : 세이브더칠드런 울산산나눔아동쉼터

2)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구분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근무시간	비고
주간 근무	09:00	18:00	1시간 (12:00~12:30, 15:00~15:30)	8시간	
오후 근무	13:00	22:00	1시간 (18:00~19:00)	8시간	금요일 주간근무
야간 근무	19:00	익일 10:00	7.5시간 (23:00~06:00, 07:00~07:30)	7.5시간	야간보상 휴가0.5
탄력 근무	09:00	18:00	1시간 (12:00~12:30, 15:00~15:30)	8시간	월요일 주간 근무
		익일 09:00	8시간 (12:00~12:30, 23:00~06:00, 07:00~07:30)	16시간	탄력근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일과 업무시작과 종료시각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상황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합니다. 근로자 \_\_\_\_\_ (인, 서명)

④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인정휴가는 취업규칙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⑤ 처우내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위(책) : 보육사(사원)
- 연봉 : 0000만원(월급여 + 수당, 내용 기재)
- 급여계산 : 월력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계산
- 지급방법 :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근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 수습기간 : 3개월로 수습기간 중 처우 변경 없음,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 진행

⑥ 기타

- 학위, 경력 등 허위사실 기재시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함
- 근로계약 후 범죄경력조회에서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함
-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근로자는 법인의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에 대한 약속,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위반시 규정에 따라 징계 받을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게시 될 수 있음

⑦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름

2022. 01. 01.

사용자 주소 :  
 시설명 :  
 대표자 : (인)

근로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 나. 시간외 근무와 비용

- 시설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식에 의해 운영
- 시설장은 시간 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는 종사자에 대해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쉼터 긴급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 공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출장신청서 제출과 출장업무 5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 출장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경비 등으로 정하며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
- 경비 지급액 사례<sup>29)</sup>

### 〈5-9〉 경비의 종류 및 지급 인정 가이드라인

구분	지급기준	인정금액	비고
야식비	업무종료 후 2시간 초과 근로(예정) 경우	7,000이내/인	휴게 시간 제외
회식비	부서(팀)단위의 직원회식을 하는 경우	10,000이내/인&월	-
주말 근무 식대	주말 근무 시 경비 지급기준 : 09:00 ~ 12:00 근무 시 중식대 : 13:00 ~ 18:00 근무 시 석식대	7,000이내/인	단,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근무는 해당 없음.
회의비 (간담회 포함)	외부관계인과의 미팅, 간담회 등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 등의 경우. 단, 미팅, 간담회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사유를 명시하고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30,000이내/인	-
택시비 (귀가)	업무 후 22:00이후 귀가 시	실비금액	-
외근 (외부교육 및 외부 회의 참석포함)	중식	외부관계인과의 미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급 안함	-
	조식, 석식	일정상 필요한 경우	10,000이내/인
	간식대 (음료 포함)	외부관계인과의 미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급 안함	적정 금액 범위내
	교통비	-	실비금액

29) 자료 : 세이브더칠드런 신나는아동쉼터

구분	지급기준	인정금액	비고
내부 회의	간식대 (음료 포함)	별도 지급 안함	-
출장	교통비, 숙박비, 식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속하여 1박2일이상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	아래 <별표2>에 따름
	간식대 (음료 포함) 등	당일 출장의 경우는 사전승인을 득한 관외 출장에 한함.	국내 : 10,000원이내/일 국외 : 20,000원이내/일

### 〈5-10〉 국내외 출장비 가이드라인

구분	숙박비	식비(1식)	교통비
국내	실비 (70,000원 기준)	실비 (10,000원 기준)	실비
			개인차량이용시 : 270원/Km
해외	실비	실비	실비

## 2 휴가제도

### 가. 휴가신청

- 시설의 장은 서식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휴가를 제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
-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
-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
- 종사자가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

## 나. 휴가의 종류

-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반가), 출산휴가, 병가, 공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포상휴가로 구분

### 1) 연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지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 가능
-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준수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결근일수 및 휴직일수 그리고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데,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한 경우에는 제외
-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 2) 출산휴가

- 시설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 후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
- 이 외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준해서 인정

### 3) 병가

-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종사자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15일의 범위 안에서 무급으로 병가 허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는 유급으로 하며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종사자의 출근이 이용자 및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규정에 의한 휴직 부여
- 시설의 장은 소속종사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관련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허가
- 병가일이 연이어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제외

### 4) 공가

- 공가를 허가하는 경우 : 1. 시설장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에 소환된 경우, 2.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 허가

### 5) 경조휴가

- 종사자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해 특별 휴가 부여
- 경조휴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
- 경조휴가 전, 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 등을 제출

〈표 5-11〉 경조휴가 일수 가이드라인 예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자녀	1
출산	본인/배우자(최초 3일은 유급, 2일 이상은 무급)	10
사망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5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6) 생리휴가

- 여자 종사자 중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 종사자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휴가 부여

### 7) 포상휴가

- 시설장은 1.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학대피해아동협약체에서 모범종사자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포상휴가 허가 5. 포상휴가 기간은 개별 쉼터 상황에 따라 결정

### 3 포상제도

#### 가. 장기근속

- 시설장은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표창과 포상을 수여
- 종사자의 근속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적용
- 포상은 시설장이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

#### 나. 장기휴가

- 시설장은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소진을 예방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기휴가를 부여
- 종사자의 근속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5일 이상의 장기휴가 고려

## 제4절

# Q&A

### 1 쉼터의 목적 및 설치기준

#### 가. 시설 기준

**Q 쉼터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아동과 종사자의 공간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2021년 3월 현재 전월세 등의 불안정한 주거공간을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문제와 신규설치지역에서 내전세임대주택 2개를 얻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기준으로 공간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특히 사춘기 시기인 중고등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공간 보장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A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또래와 또는 동생들과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개인공간 배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는 쉼터회의를 통해서 하루에 최소 일정시간 개인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동들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몇 회(또는 몇 시간) 혼자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주기, 치료실 이용시간이 아닌 주말 또는 저녁시간의 경우 큰아이들의 분리공간으로 사용하기

**Q 종사자의 휴게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까요?**

A 대안적으로 치료실이나 사무공간 등 조용한 곳을 커튼/파티션 등으로 공간 구분해서 휴식의자 등을 두거나 다른 인력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

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휴게시간에 다른 인력이 시설에 존재할 경우 밖으로 나가 차를 마시거나 산책하기

## 나. 종사자 기준

**Q 종사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아동보육과 치료의 연계성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업무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하여 종사자 교체로 인한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들의 불안감도 최소화시켜야 하므로 시설장을 비롯한 기존 종사자들이 안정감 있게 근무하여 보육과 치료서비스가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이므로 일주일에 1회 정도 전체회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양육방법이나 규칙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 이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Q 보육과 취사, 행정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쉼터에서 보육업무는 보육사 교대 업무로 인해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보육업무는 연간 계획과 월 1회 점검, 분기보고, 연말 평가 등의 업무 일정을 각자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입소시설은 교대업무 특성상 명확한 역할분담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논의를 통해서 업무분장/배분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 취사업무는 내부 보육사 회의를 통해 업무분장을 조정, 외부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취사보조 인력을 확보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대체인력을 취사업무에 배정, 보육사는 아동보호에 집중하도록 행정업무는 시설장과 행정담당인력을 배치

## 다. 예산 및 예산운용

**Q 통합예산이지만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간 조정 비율이 허용되지 않아서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현재 목간 변경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사유가 분명할 경우 지자체 사전승인 공문이 있으면 사업비와 운영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외부사업공모를 통해 민간기관의 후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아동보호절차

### 가. 입소관리

**Q 학대 피해아동은 입소 당시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오게 될까요?**

A 아동의 심리특성에 따라 불안감, 죄책감, 우울감, 분노감, 공격성 등 아동들의 생각과 느낌은 다양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치료받고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아동들이 쉼터 종사자들의 사랑과 보호를 통해 어른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게 된 후 원가정 복귀나 장기시설로 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아동보호와 치료

**Q 아동갈등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갈등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각 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지만, 아동들이 갈등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보육사들의 일관성 없는 규칙적용 등 아동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A 일관성 없는 규칙적용은 아동들의 신뢰감을 낮출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과정에서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규칙준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필요할 경우 아동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게 되면 스스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Q 아동 가출, 아동음주, 아동의 이성교제, 아동 흡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원가정에서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아동들이므로 쉼터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주어지는 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음주와 흡연은 입소시기에 정확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와 흡연의 횟수가



강도에 따라 아동들이 스스로 결정한 처벌 규칙을 적용합니다. 음주와 흡연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횡수를 줄이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아동의 행동상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동 처벌 팁 : 아동문제 수준에 따라 강도를 조정	
<b>긍정적 강화의 철회 (좋아하는 것을 금지)</b>	간식 횡수 제한(금지), 핸드폰 사용 시간 제한/금지, TV 시청 시간 제한/금지, 게임시간 제한/금지 등
<b>부정적 강화 제공 (싫어하는 것을 제공)</b>	줄넘기 100회, 학교 운동장(아파트 놀이터 등) 3번 돌기, 혼자 전체 아동빨래 개기, 수건개기, 혼자 방청소 하기, 문제집(학습지) 추가로 더풀기 등

▼ 음주/흡연 줄이기 활동 : 단계적 감소법 적용 사례

- 1주차 이전보다 30% 감소(일주일에 7회였다면 4회로 줄이기) 100% 준수 - 용돈 2배, 소원 카드, 치킨카드, 입소아동 전체 박수쳐주기 등 긍정적 강화 제공 → 준수 수준에 따라 조정
  - 2주차 이전보다 50% 감소 준수 수준에 따라 긍정적 강화 제공 - 특별 칭찬상, 우수 아동상 등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3주차 이전보다 70% 감소 준수 수준에 따라 긍정적 강화 제공 - 이전과 다른 강화제를 제공, 아동이 좋아하는 게임시간 증가, 핸드폰 시간 증가, 영화보기 등 문화활동 추가
  - 4주차 이전보다 90% 감소 준수 수준에 따라 긍정적 강화 제공
  - 5주차 100% 수료증 제공 등 가능하면 쉼터 행사로 진행하여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도록 유도
- .....
- 음주와 흡연 수준에 따라 단계적 감소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중독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외부 전문가와 병원 등과 연계해야 합니다.

아동의 이성교제는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지로 금지할 경우 이성교제를 숨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성친구에 대한 정보, 쉼터의 비밀보장 규칙, 성교육 등 지켜야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면 허용해야 할까요?

A 쉼터 아동들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동안 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쉼터 위치 노출, 비밀보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구체적 이유를 파악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취업과 연계하여 아르바이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쉼터에서 지켜야 하는 비밀보장 등 쉼터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Q 아동들의 핸드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쉼터에서 아동자치회 등을 운영하여 아동과 함께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금지하면 아동의 불만이 쌓이고 무조건 허용하면 비밀보장이나 사이버/게임 중독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들과 함께 논의하여 아동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스스로 정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긴 경우 아동들에게 긍정적 강화의 제거나 부정적 강화 제공으로 벌칙을 제공해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

- 핸드폰 사용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 친구들과 관계유지, 부모와의 소통, 스트레스 해소 등
- 핸드폰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쉼터 비밀유지, 게임중독, 지나친 SNS 활동, 시간 낭비 등
- 우리 쉼터에서 핸드폰 사용에 대해 규칙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 학교에서만 사용(등하교시), 학원 등원, 9시 이후 사용 금지, 일정 시간에만 사용 등

**Q 성격 등이 맞지 않은 아동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A 아동들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다른 성격의 아동들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도록 규칙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아동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성격의 아동들과의 대화방법 등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폭력성이 너무 큰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다른 아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에서 해야 할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A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쉼터에서 폭력행동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시로 주지시키고, 폭력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폭력 수준에 따라 경찰을 부르거나 전원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폭력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쉼터 대응방안(또는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Q 아동 간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A 아동 간 폭력사건을 포함하여 쉼터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대응방안을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쉼터에서 아동들에게 상호 폭력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올 수 있고,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할 수 있고, 전원 될 수 있다는 것을 규칙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들이 스스로 폭력행동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쉼터에서 정해진 규칙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규칙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합니다.

**Q 아동이 학교생활 중 ‘친구들이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말할 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A 쉼터는 비공개시설이므로 다른 친구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아동 지도를 위한 팁’을 참고하여 피해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아동 지도를 위한 팁**

- 아동들에게 ‘하얀 거짓말’의 의미 등을 설명해주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 어린 아동들은 게임놀이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들어, ‘선생님이 특별히 거짓말 카드를 줄게요. 이 카드를 사용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요. 친구들에게 쉼터에서 사는 것과 부모님과 분리돼서 사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라고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다.

**Q 아동이 쉼터의 공동생활과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워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A 아동들의 개별 성격에 따라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동들과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동의 심적 부담감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쉼터 입소시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아동의 성향 등을 파악해서 이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과 논의하여 치료계획을 통해 적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아동들의 경우 매뉴얼을 참조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적응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 사례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사례회의는 쉼터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 입소 후 쉼터에서는 아동의 정보를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사례회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아동을 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해서 보다 건강한 상태로 원가정 복귀나 장기시설로 전원시켜야 합니다.

**다. 사례관리**

라.  
취소와  
사후관리

**Q**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나 전원조치 등 취소에 대한 정보제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입소아동의 적응프로그램 과정에서 취소시기 결정과정과 취소 조치 등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아동의 연령에 맞게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취소시기 등 결정을 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쉽터 이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비대면 온라인 상으로도 가족만남 연결 추진해주는 방법은 어떤가요?

A 가족과의 연락은 쉽터 입소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아보전과 학대전담공무원이 동의한다면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영상통화 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으므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 등 규칙을 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영상통화로 인해 쉽터의 시설노출 등 부작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비밀보장과 안전

가.  
비밀보장

**Q** 비밀보장 유지에 대해 주의하지만 아동들이 말하는 경우엔 어렵고 특히 초등생의 경우나 지적장애아동의 경우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 개별아동의 연령과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적장애나 어린아동들은 비밀보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동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 학교장에게 학대피해정보를 제공하며 담임에게는 최소한으로 정보 제공, 학교생활지도를 위해 담임에게만 정보공유

**Q** 비밀보장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직원,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고 유출 시킬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습니

다. 강경한 대응이 있어야 비밀보장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A 현재 비밀보장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비밀보장을 준수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는 가능하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나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모집되었다면 관련 기관에도 알려야 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법적 처벌 등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비밀보장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윤리적으로 아동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재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밀보장 준수 서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비밀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취업이나 경력 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사전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학교와 학원 내에서 아동의 학대피해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A 학대피해사실은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를 한 경우 비밀보장 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장과 교사, 학원도 학원장 등 최소인원으로 공개해서 비밀보장 유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대피해 상황을 알릴 경우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의도하지 않게 교사 등이 피해사실을 노출할 위험가능성이 증가합니다.

**Q** 학교 등 아동교육과 보호체계 내에서 어디까지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나요?

A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비밀보장에 대한 교육청 매뉴얼을 참고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교육청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낙인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에 아동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아동이 비밀보장을 어기고 외부에 이곳의 아이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아동의 입소시기에 비밀보장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아동에게 쉽터의 위치나 다른 아이들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이야

기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공기관에 알려서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등에 일정기간 동안 쉼터 주변 순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도록 지속적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Q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동의서에 보호자가 법적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개인정보동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하는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외 다른 상황에서는 지자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아동이 보호자와 통화를 원할 경우 보호시설이 공개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동과 보호자와의 통화는 하게 하는 것이 맞나요?**

A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문담공무원/학대사례판정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련자와 협의하거나 사례회의 등을 통해서 가능한 쉼터 규칙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직접 쉼터에 방문하여 보호자와 연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발신제한 번호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쉼터는 전체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보호자와 통화를 못하는 아동들도 있으므로 통화시간이나 장소 등을 규칙에 따라 허용해야 합니다.

**Q 입소해있는 아동이나 타 경로로 인해 쉼터 위치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 대책방법은 무엇인가요?**

A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서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학대 행위자가 찾아올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 등 공공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아동의 등하교나 학원 등 아동의 일정 등을 살펴보고 아동에게도 쉼터의 위치가 노출될 경우 모든 아동들이 위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쉼터 위치 노출로 인해 지속적으로 아동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쉼터장소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나. CCTV 관리

**Q CCTV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자체별 설치기준이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는 거실, 학습 공간, 놀이치료실 등 사생활 침해가 없는 공동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 안내와 동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다. 아동 안전

**Q 긴급보호는 시설입소가 되지 않는데 만약 사고발생 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A 응급으로 단 하루라도 입소되는 경우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하고, 사고발생 대처도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쉼터가 손해배상공제를 정원 7명으로 들기 때문에 정원이상으로 입소되지 않았을 때는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상이 문제가 될 경우 보험회사와 추가적인 특약설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라. 종사자 안전

**Q 아동폭력행동에 대한 대처와 종사자 보호방안은 무엇인가요?**

A 아동의 폭력행동에 대한 대처와 종사자 보호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내용, 아동안전과 종사자 직무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쉼터안에서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폭력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 등 아동의 힘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폭력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 4 지역사회 자원 이용

### 가. 지역사회 연계

**Q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구하고, 소아정신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 및 외부 치료 연계 진행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일까요?**

A 우선적으로 아동 입소시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현재 아동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보전과 협의하여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전문

가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진행한 것은 적절한 개입입니다. 아동이 약물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약물복용 수준을 조절해야 하며, 아동의 발달적 특성상 약물치료는 가능한 최소화해야 합니다.

**Q 외부의 전문적 치료를 받고 싶는데 비용문제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동의 주소지가 심터로 옮겨져 있거나, 보호자 협조가 가능하다면 지역 사회바우처 신청을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탁법인, 지역사회 후원(정신과, 심리치료기관 등), 지역사회 아동복지협의회, 정신보건센터,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비공개시설이라 후원금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서 후원금이 부족합니다. 후원금 모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비공개시설 특성상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하는 등 직접적인 후원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사회공헌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프로그램 후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동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협의회를 통해 후원금이나 후원자 모집 홍보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나.  
후원금(자)  
모집**

## 부록 | 서식



[서식 1] 아동 입소 시 확인사항 예시	170
[서식 2] 아동 입소 후 체크리스트 예시	171
[서식 3] 아동 서약서 예시	172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예시	173
[서식 5] 초상권 사용 동의서 예시	174
[서식 6] 입소패키지 구성목록표(견본)	175
[서식 7] 리플렛 예시	176
[서식 8] 아동 서비스 계획서 예시	178
[서식 9] 심터 아동양육서비스 내용 예시	179
[서식 10]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 연간 계획표	180
[서식 11]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월 프로그램 계획표	181
[서식 12]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문화프로그램 계획서	182
[서식 13] 초기면접지	186
[서식 14] 심리평가보고서	189
[서식 15] 심리검사보고서	190
[서식 16] 사례개념화	191
[서식 17] 심리치료동의서	192
[서식 18] 심리치료일지	193
[서식 19] 심리치료결과보고서	194
[서식 20] 퇴소확인서 예시	196
[서식 21] 슈퍼비전 양식 사례	197
[서식 22] 종사자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	198

[서식 1] 아동 입소 시 확인사항 예시

아동 입소 시 확인 사항			
<b>인적정보</b>			
입소일	년 월 일	입소의뢰기관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현재 나이	( )세 ( )월
<b>건강상태</b>			
체온	( )℃	코로나19 선별검사	( )차
일반적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 ) <input type="checkbox"/> 질환(유형 : )		
<b>학대 관련</b>			
유형(다 체크)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정서 <input type="checkbox"/> 심리 <input type="checkbox"/> 성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기타( )		
피해 상흔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내용 : )		
병원	<input type="checkbox"/> 치료 <input type="checkbox"/> 진료 <input type="checkbox"/> 약물복용	진료과	
특이 사항	<input type="checkbox"/> 기타(예 : 음식 알레르기 )		
<b>교육 관련</b>			
보육/교육기관	<input type="checkbox"/> 안 다님 <input type="checkbox"/> 보육시설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기타( )		
<b>아동 소지품 수량</b>			
피복류	<input type="checkbox"/> 속옷( ) <input type="checkbox"/> 상의( ) <input type="checkbox"/> 하의( ) <input type="checkbox"/> 외투( ) <input type="checkbox"/> 교복( ) <input type="checkbox"/> 양말( ) <input type="checkbox"/> 신발( )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학용품	<input type="checkbox"/> 책가방( ) <input type="checkbox"/> 문방품( ) <input type="checkbox"/> 장난감(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개인 소지품	<input type="checkbox"/> 핸드폰( ) <input type="checkbox"/> 교통카드( ) <input type="checkbox"/> 화장품( ) <input type="checkbox"/> 귀중품( ) <input type="checkbox"/> 용돈(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서식 2] 아동 입소 후 체크리스트 예시

아동 입소 후 체크리스트			
<b>인적정보</b>			
이름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현재 나이	
연락처			
아동 본인		보호자	
담임선생님		친구	
<b>수령 여부</b>			
입소요청 공문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아동카드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입소의뢰서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보호자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피해아동보호 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심리치료결과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통장, 도장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주민등록등본	<input type="checkbox"/> 수령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b>처리 여부</b>			
병원진료 계획	<input type="checkbox"/> 처리 <input type="checkbox"/> 미처리	경찰조사 계획	<input type="checkbox"/> 처리 <input type="checkbox"/> 미처리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아동등록	<input type="checkbox"/> 처리 <input type="checkbox"/> 미처리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 아동등록	<input type="checkbox"/> 처리 <input type="checkbox"/> 미처리
학교 전학	<input type="checkbox"/> 처리 <input type="checkbox"/> 미처리	어린이집 등원	<input type="checkbox"/> 처리 <input type="checkbox"/> 미처리
<b>아동 서약 및 확인 여부</b>			
초상권사용동의서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입소확인서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입소아동 사진촬영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디딤씨앗통장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기초수급대상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 아동 서약서

- ① 나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 ②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지 않을 것이고, 외모를 지적하거나, 놀리지 않겠습니다.
- ③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말하도록 노력하고, 어른의 부탁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싶다면 분명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함께 생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해진 식사시간에 식사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식사예절을 지키겠습니다.
  - 정해진 수면시간을 지켜 취침시간, 기상시간을 지키겠습니다.
  - 개인위생(외출 후 손 씻기, 목욕하기)과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 컴퓨터, 핸드폰 사용시간을 지키며 유익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 선생님, 친구들과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주지 않겠습니다.
  -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심리치료, 안전교육, 체험활동, 아동회의에 참여하겠습니다.
  - 쉼터는 비밀보장이 되는 곳으로 주소, 전화번호,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쉼터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위 생활규칙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아동권리(아동보호) 정책 관련하여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으며  
 규칙을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에는 퇴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인)

(○○학대피해아동쉼터)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예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그룹홈 생활 아동의 개인정보를 아래 내용과 같이 수집,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아동보호관련 업무(병원진료, 약 처방, 학교 및 학원 관련업무, 연계기관)
- 지자체 보고(입·퇴소 및 현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통해 아동권리과에 보고함)
- 심리치료 소견(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전문시설)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소속 외 아동카드 각 항목
- 선택정보 : 계좌번호, 이메일

###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위에 기재한 수집 이용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후,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 확인된 때에 파기함.

※ 아동은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함께 지내는 동안 위 생활규칙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아동권리(아동보호) 정책 관련하여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으며  
 규칙을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에는 퇴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인)  
 보호자 \_\_\_\_\_ (인)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은

##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금의 상처를 잘 치료하고 회복하도록 쉬어 가는 우리들의 따뜻한 '집'입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숫~! 비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집 주소를 이야기하거나 같이 사는 친구, 언니,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집이 보이도록 영상통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도 집에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서로를 지켜줘야 해요.

##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함께 먹고 자며, 서로서로 가깝고 친하게 지내지만 다른 친구에게는 꼭 "똑똑",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봐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라고 불러요. 경계가 있어야 나의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이 섞이지 않아요. 또 몸을 부딪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계가 있어야 나도, 함께 지내는 친구도 안전할 수 있어요.

## 우리 모두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 안전한 집에서 충분히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
- 누군가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권리
-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배울 수 있는 권리
-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해요

-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요
- 이야기하기 힘들 때는 편지를 써도 되고, 아동회의 때 함께 이야기해도 돼요
-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선생님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선생님께는 비밀 이야기를 해도 안전해요

## 잘 먹고 잘 자기

- 건강한 음식과 간식을 먹어요
- 좋은 꿈꾸며 잘 자도록 그림책을 읽어요
- 필요할 때에 필요한 옷을 구입해요
- 내 용돈을 스스로 관리해요

## 학교·학원 잘 다니기

- 학교와 학원을 잘 다녀요
- 배우고 싶은 공부(영어, 수학 등)를 배울 수 있어요
-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배워요
-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해요

## 잘 놀기

- 가족나들이로 수영장, 바닷가 등 야외로 놀러 가요
-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견학을 가요
- 영화, 연극, 서커스 등 공연을 봐요
- 공원, 놀이터로 산책을 해요

## 몸과 마음 아프지 않기

- 마음이 아플 때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해요
- 몸이 아플 때는 바로 병원을 가요
- 먹는 약 또는 바르는 약을 챙겨요
- 아프지 않아도 건강을 항상 체크해요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서로 다치지 않게"

함께 사는 동안 서로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상처 주는 일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함께 노력해요

[서식 8] 아동 서비스 계획서 예시

아동 서비스 계획서						
□ 초기계획 □ 재계획 □ 후속계획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만)	
기본사항	입소일		담당 지자체			
발달상태	키	cm	몸무게	kg	상태	□ 양호 □ 불량
건강문제	상태				섭식문제	□ 무 □ 유 ( )
학대특성	유형	□ 신체 □ 심리정서 □ 성 □ 방임			상흔	□ 무 □ 유 ( )
아동특성	심리 정서					
	고려 사항					
	욕구	(학습, 문화, 사회적 측면)				
주호소 및 핵심 문제	주호소					
	핵심문제					
	핵심문제 원인 / 강화요인					
<b>장기목표</b>						
보호계획	구체적 단기목표					
	접근 방법					
	서비스 시작일					
	개입 기간/ 주기					
치료계획	구체적 단기목표					
	치료 유형					
	접근 방법					
	예상 치료기간(회기 수)					
	치료 시작일					
	치료 주기					

[서식 9] 쉼터 아동양육서비스 내용 예시

쉼터 아동양육서비스 내용				
영역	서비스명	내용	고려 사항	
아동 보호	일상 생활 지원	일일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시군구의 요청에 의한 학대피해 아동	
		위생지도	위생에 대한 교육 및 습관 형성과 목욕비 지원	
		이미용	위생에 대한 교육 및 습관 형성과 이미용비 지원	
		의복지원	응급초치아동 및 계절과 자신의 사이즈에 맞는 의복 지원	
		생활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주부식비 지원	
	의료 지원	건강검진	쉼터에 입소하는 모든 아동의 건강검진 지원	
		응급치료	응급상황 발생 시 119 혹은 병원응급실 방문하여 응급처치 실시	
	병원진료	보호아동의 건강 이상시 인근병원을 방문,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 문화	교육 지원	경제교육	적당한 용돈지급과 사용지도로 만족감 형성 및 도박 예방	
		교육지원	교육 및 특기적성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학습교통지원	숙제 및 준비물 준비지도 및 아동 교통비, 급식비 지급	
		아동안전교육	교통안전, 성폭력,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실종유괴, 인권 교육 실시	
	문화 여가 지원	자체프로그램	예체능 및 쉼터 자체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아동 간의 유대감 강화	
		행사지원	아동생일, 명절, 기념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졸업식 등 행사지원	
		문화체험	입소아동의 문화체험 활동 지원(영화, 공연, 가족여행 등)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지원	심리검사	입소아동의 심리검사 및 외부검사/외부상담 연계	
아동 상담	상담 지원	아동상담	쉼터 생활, 학교생활 등 개별상담 실시	
		유관기관상담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보육시설과 상담 실시	

[서식 10]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 연간 계획표

교육문화서비스 연간 계획표				
	가족행사 및 기념일	문화체험활동	안전교육	자체프로그램
1월	•해돋이 •생일잔치	•영화관람 •지역사회 나들이	•약물오남용 •실종유괴예방 •교통안전	*기관 자체 인력으로 아동 프로그램 진행 (월 2회 이상)  • 기초학습지도 • 요리활동 • 미술활동 • 생활체육 • 그림책 활동  • 가족회의 • 고충처리  • 진로체험활동
2월	•명절행사 •생일잔치 •졸업식	•영화관람 •쿠킹클래스	•재난안전	
3월	•삼일절 •생일잔치 •입학식	•영화관람 •벚꽃나들이 •볼링	•교통안전 •성폭력예방 •아동인권	
4월	•식목일 •봄소풍 •생일잔치	•클라이밍 •대공원자전거	•약물오남용 •실종유괴예방	
5월	•어린이날 •스승의날 •생일잔치	•영화관람 •지역사회 나들이	•교통안전 •성폭력예방	
6월	•현충일 •생일잔치	•낭만캠핑1 •야구경기관람	•약물오남용 •실종예방	
7월	•제헌절 •생일잔치	•연극관람 •워터파크	•재난안전 •교통안전 •아동인권	
8월	•광복절 •생일잔치	•여름방학캠프 •박물관관람	•성폭력예방	
9월	•명절행사 •생일잔치	•농구경기관람 •낭만캠핑2	•약물오남용 •실종예방	
10월	•가을소풍 •생일잔치	•영화관람 •제주가족여행	•성폭력예방	
11월	•생일잔치	•영화관람 •시티투어	•재난안전 •아동인권 •교통안전	
12월	•크리스마스 •생일잔치	•영화관람 •썰매타기	•약물오남용 •실종유괴예방	

[서식 11]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월 프로그램 계획표

월 프로그램 계획표							
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1	2	3	4	5	6
		3.1절 의미 새기기 /주간학습	신체활동	주간학습	원예활동	자율활동 (보육사 DAY)	산책/ 자율학습 아동생일
2주	7	8	9	10	11	12	13
	대청소/ 산책 문화체험	신체활동	주간학습	주간학습	신체활동	방구석 노래방	산책/ 자율학습
3주	14	15	16	17	18	19	20
	대청소/ 자율시간/ 요리활동	주간학습	교통안전 교육	주간학습	신체활동	성교육	영화관람
4주	21	22	23	24	25	26	27
	대청소/ 자율시간	신체활동	신체활동	주간학습	주간학습	가족회의	산책/ 자율학습
5주	28	29	30	31			
	대청소/ 자율시간	주간학습	재난안전 교육	주간학습			

[서식 12] 교육문화 서비스 예시: 문화프로그램 계획서

문화프로그램 계획서 양식

프로그램명 :

목적 :

세부목표 :

- 가.
- 나.

1. 세부 추진계획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 총   명(참가아동 :   명 / 참가성인 :   명)

업무분장

○○○(시설장)	
○○○(보육사)	
○○○(보육사)	

업무일정 또는 프로그램 세부 일정

날짜	내용	날짜	내용

준비물 :

예상비용 : 금일백십만천백원정 (₩0,000,000)

내역	단가	수량	금액
총계			

2. 아동안전보호 관련 예방 및 조치 계획

단계	영역	위험요인	아동안전보호 적용/조치 방안	적용 시기

구분	문화프로그램 사전답사 현장 점검표	확인	조치
아동 안전 보호	행사장소, 활동 등은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계획되었는가		
	아동 대비 보호자의 숫자가 기관 내부규정에 맞게 배치되었는가		
	아동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안전보호담당자의 연락처가 공유되어 있는가		
	아동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시 또는 행사관련 불만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예. 건의함 등)		
응급 사항	아동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시 24시간 내 아동안전보호담당자에게 보고가 되었는가		
	아동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키트가 준비되었는가		
안전 점검	직원 및 관계자는 응급상황별 대처요령, 의약품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의료시설, 경찰서 등 정보를 숙지하고 이를 공유하였는가		
	행사장소에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는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사전답사 시 위험요인을 공유하였는가		
위생 안전	아동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물질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낮은 구조물을 제거하였는가		
	아동(영유아)들이 활동하는 공간의 지면은 안전한가		
	행사장 내 위험한 지역이나 공간이 있을 경우,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세워져 있거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었는가		
	행사장소에 강이나 조리대, 건축 현장 등 위험한 환경이 있는가		
위생 안전	차량통제 및 위험구간이 상세하게 확인되었는가		
	아동들의 간식 또는 음식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위생 안전	식수대, 화장실 등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가		

〈아동 준수 사항〉

- ①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한다.
- ② 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③ 교육 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④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에는 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 ⑤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⑥ 일정표에 따른 규칙적인 단체생활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 활동은 삼간다.

〈교통 안전 사고 예방〉

- ① 승·하차시 질서를 잘 지키도록 한다.
- ② 모든 차량에는 반드시 교사가 1명 이상 동승하여 차내 질서, 안전, 청결에 대한 지도를 한다.
- ③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 ① 인솔책임자 및 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인솔책임자 및 교사는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 ③ 사고 수습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상부 기관에 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한다.

〈야외활동 시 성폭력 예방〉

- ① 낯선 사람을 따라가거나 성인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거절하거나 인솔 교사에게 알린다.
- ② 반드시 친구 여럿이 또는 모둠별로 다니며 혼자 다니지 않는다.
- ③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인솔 교사에게 알린다.

〈폭력예방 교육〉

- ① 체험활동을 할 때에는 평소와는 달리 친구들이 예민해질 경우가 있으니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 ② 서로 불편한 사항이 생길 때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선생님의 조언을 구한다.
- ③ 활동 중인 다른 친구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선생님에게 즉시 알린다.
- ④ 폭행, 감금,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휴대폰 사용) 등 어떠한 형태의 폭력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관한 점검 사항〉

- ① 프로그램 진행 전 아동 개인별 증상(기침, 인후통, 발열 등)을 확인하고 체온을 체크한다.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 방역 수칙에 따라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 ②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한다(손소독제, 마스크 여유분 준비)
- ③ 프로그램 장소 선정 시 사람이 많고 밀접 접촉하기 쉬운 밀폐된 장소는 피하며, 식사와 간식 섭취 시 단독으로 구성된 장소를 이용한다.
- ④ 프로그램 시행 전, 아동들에게 전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명) 결과보고서

프로그램명 :

목적 :

세부목표 :

- 가.
- 나.

1. 세부 추진계획

일시 :

장소 :

참가인원 : 총   명(참가아동 :   명 / 참가성인 :   명)

프로그램 진행 내용

진행 내용	
소감 및 평가	
활동 사진	

예산진행내역 : 금일백십만천백원정 (₩0,000,000)

내역	단가	수량	금액
총계			

2. 아동안전보호 관련 평가

단계	위험요인	평가내용	비고
기획	아동의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및 관련 유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였는가?		
실행	실행하면서 사전 점검이 적절했던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모니터	아동안전보호 관련하여 이후 반영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서식 13] 초기면접지

### 초기면접지

초기면접일시	20년 월 일(요일) : ~ :		
초기면접자	(인)		
이름(성별)		사례번호	
생년월일		만 나이	만 세 개월
학력	학교	학년 (재학, 졸업, 유예, 자퇴)	

#### 초기면접 의뢰 사유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 여부, 동거여부 등 기록)

#### 가정 상황

가족 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가정	<input type="checkbox"/> 편부가정(사별)	<input type="checkbox"/> 편부가정(이혼)	<input type="checkbox"/> 편부가정(가출)			
	<input type="checkbox"/> 편부가정(별거)	<input type="checkbox"/> 편모가정(사별)	<input type="checkbox"/> 편모가정(이혼)	<input type="checkbox"/> 편모가정(가출)			
	<input type="checkbox"/> 편모가정(별거)	<input type="checkbox"/> 미혼부가정	<input type="checkbox"/> 미혼모가정	<input type="checkbox"/> 미혼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친부 + 계모	<input type="checkbox"/> 친모 + 계부	<input type="checkbox"/> 친인척보호	<input type="checkbox"/> 친부 + 동거녀			
	<input type="checkbox"/> 친모 + 동거남	<input type="checkbox"/> 가정위탁	<input type="checkbox"/> 입양가정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시설보호(기관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가족 관계	성명	관계	나이	종교	학력	직업	동거여부
가계도							
가족력	(가족형성/해체 과정, 부-모의 관계 변천사,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와의 관계, 가족병력 등)						

#### 보호자 특성(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성격및기질문제	<input type="checkbox"/> 어릴적학대경험	<input type="checkbox"/> 알콜남용	<input type="checkbox"/> 약물남용
<input type="checkbox"/> 신체질환및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신질환및장애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은아동	<input type="checkbox"/> 부적절한양육태도
<input type="checkbox"/> 양육지식및기술부족	<input type="checkbox"/> 부부및가족갈등	<input type="checkbox"/> 성문제	<input type="checkbox"/> 스트레스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고립	<input type="checkbox"/> 경제적어려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폭력	<input type="checkbox"/> 존속학대
<input type="checkbox"/> 전과력	<input type="checkbox"/> 종교문제	<input type="checkbox"/> 도박,게임중독	<input type="checkbox"/> 특성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 ( )

#### 아동 특성(복수응답 가능)

<input type="checkbox"/> 거짓말	<input type="checkbox"/> 반항, 충동, 공격성	<input type="checkbox"/> 도벽	<input type="checkbox"/> 가출
<input type="checkbox"/> 약물	<input type="checkbox"/> 흡연	<input type="checkbox"/> 음주	<input type="checkbox"/> 인터넷(게임)중독
<input type="checkbox"/> 성문제	<input type="checkbox"/> 주의산만	<input type="checkbox"/> 과잉행동	<input type="checkbox"/> 늦은귀가
<input type="checkbox"/> 불건전한 또래관계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 기피(은둔형 외톨이)		<input type="checkbox"/> 학교부적응
<input type="checkbox"/> 잦은결석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피해자(왕따)	
<input type="checkbox"/> 불안	<input type="checkbox"/> 애착문제	<input type="checkbox"/> 무력감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낮은자존감	<input type="checkbox"/> 신체발달지연	<input type="checkbox"/> 언어문제	<input type="checkbox"/> 학습문제
<input type="checkbox"/> 대소변문제	<input type="checkbox"/> 성격및기질문제	<input type="checkbox"/> 위생문제	<input type="checkbox"/> 틱(음성/신체/뚜렛)
<input type="checkbox"/> 급(만)성질병	<input type="checkbox"/> 영양결핍	<input type="checkbox"/> 탐식및결식	<input type="checkbox"/> 특성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문제력 (대상자의 문제행동이 최초 나타난 시기,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자/아동의 반응 등)

치료를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아동의 특성 ( )

#### 생육사

임신	(약복용, 임신 중 발생질환, 입덧, 심리상태, 계획임신여부, 임신에 대한 주변반응, 분만형태 등)
수유 및 식사	(수유방법, 숟가락질 시기, 식습관 등)
대소변	(대변 및 소변 가린 시기, 대소변훈련시 어려움, 대변상태-정상·변비·유분 등)
수면	(잠투정 유무, 잠투정 시기, 수면시 특이사항 등)

발달사	
신체발달 사항	(목가누기, 뒤집기, 앉기, 기기, 걷기, 뛰기 등)
언어발달	(옹알이시기, 첫말단어, 현재 언어수준, 언어유실 등)
사회성 발달	(눈맞춤, 낯가림,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낯선사람과 상호작용 등)
시기별 주양육자	

교육사	
학령전 교육	(가정내 교육,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외부교육 등)
학령기 교육	(학습수준, 좋아하는 활동 또는 과목, 싫어하는 활동 또는 과목, 성적 등)

건강정도	
질병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질병명 : _____ )	
장애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장애명 : _____ 장애 _____ 급)	
병원치료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회/ 병력 : _____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통원 / 총 _____ 년 _____ 개월)	
정신과진단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진단명 : _____ / 약물복용여부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총 _____ 년 _____ 개월))	
타기관상담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상담사유 _____ / 회/ 기간 총 _____ 년 _____ 개월)	

### 대상자 태도 및 관찰내용

### 면접자소견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식 14] 심리평가보고서

## 심리평가 보고서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만 세 개월)
학력	학교	학년 (재학, 졸업, 유예, 자퇴)		
평가날짜				

의뢰사유

실시한 검사

검사 태도와 행동

심리평가결과

평가자 소견

평가자 : (임상심리 자격명칭 및 번호) \_\_\_\_\_

(○○학대피해아동쉼터)

[서식 15] 심리검사보고서

## 심리검사 보고서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만 세 개월)
학력	학교	학년 (재학, 졸업, 유예, 자퇴)			
검사날짜					

의뢰사유

---

실시한 검사

---

검사 결과

---

검사자 소견

---

검사자 : (검사자 자격 명칭) \_\_\_\_\_

---

(○○학대피해아동센터)

[서식 16] 사례개념화

## 사례개념화

case conceptualization

내담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내담자 특성	의뢰사유					
	내담자의 특성		행동적, 정서적 특징 등			
주 호소 및 핵심 문제에 대한 가설	내담자의 주 호소					
	핵심문제		초기면접, 심리검사 등을 바탕으로 파악 요망			
	파악 된 핵심문제의 원인 혹은 강화요인					
치료목표	장기목표					
	구체적 단기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치료계획	치료유형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치료기법		정신분석, 인간중심, 해결중심치료 등			
	예상 치료기간					
	예상 치료 회기 수					
	상담일시					

(○○학대피해아동센터)



## 심리치료 동의서

<b>내담자 성명</b>		<b>성별</b>	남, 여	<b>생년월일</b>	년 월 일(만 세 개월)
---------------	--	-----------	------	-------------	---------------

**심리치료** 심리치료는 심리치료를 신청한 본인(이하 내담자)이 심리치료 전문능력을 갖춘 치료사에게 현재의 어려움이나 도움 받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치료사와 내담자가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내담자는 적극적으로 상담과정에 참여할 때 상담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구조** 심리치료는 주 회 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치료내용의 보관** 심리치료의 내용은 더 나은 심리치료를 위한 슈퍼비전, 사례회의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 및 녹음(녹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내용은 기관 내에서만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자 상담 시 구두설명으로만 제공됩니다. 단, 내담자가 위급상황(자살, 자해 또는 살해, 폭력과 관련된 위험 등)이라고 판단될 경우나 법령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지침에(수사기관, 요청 등)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제2항, 제46조제2항제7호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6호,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 및 심리치료 내용을 수집, 이용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합니다.

위 사항들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심리치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내담자 \_\_\_\_\_ (서명)      치료사 \_\_\_\_\_ (서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 심리치료일지

작성일자 20 년 월 일(요일)      작성자 \_\_\_\_\_ (인)

<b>성명</b>		<b>사례번호</b>	
<b>치료일시</b>	20 . . ( ) : ~ :	<b>치료장소</b>	
<b>치료유형</b>		<b>회기</b>	
<b>회기목표</b>			
<b>치료내용</b>			
<b>치료평가</b>			

(○○학대피해아동쉼터)

## 심리치료 결과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요일)

성명	(남, 여)	사례 번호	
치료 기간	20 . . ~ 20 . . (총 회기)	작성자	(인)
의뢰 사유 및 주소			
사전 평가			
치료 목표			
단계	회기	일시	프로그램 내용
초기	1		
	2		
	3		
중기1	4		
	5		
	6		
	7		
	8		
	9		
중간 소견	치료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 중간 평가 시기는 조정가능		

중기2	10		
	11		
	12		
	13		
	14		
	15		
	16		
	17		
말기	18		
	19		
	20		
사후 검사			
치료종결 사유			
치료 평가 및 소견			

\*심리치료 전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 추가 작성 요망

## 퇴소확인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이제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항상 \_\_\_\_\_ 아동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① 개인 짐 정리를 다 하였나요?

• 옷장, 서랍장, 신발장에 있는 짐과 그룹홈에 맡겨둔 짐까지 잘 확인하였습니다.

② 그룹홈과 관련한 기록은 다 삭제하였나요?

•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사진, 카톡 등을 다 삭제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전했는지요?

•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한 식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를 다 하였고, 퇴소 후에 필요한 연락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과 하겠습니다.

퇴소일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이름 \_\_\_\_\_ (인)      확인자 \_\_\_\_\_ (인)

(○○학대피해아동쉼터)

##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내용 보고서

슈퍼비전 일시 \_\_\_\_\_ 상담자 \_\_\_\_\_

상담기간 및 진행된 회기 수(날짜)

내담자 인적사항 (개인사, 가족관계, 포함)

주호소 문제 (신청서 기재 내용, 심리검사 결과 포함)

사례 개념화 : 상담자가 파악한 내담자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접근

*내담자의 문제, 증상의 원인 및 관련 요인 그리고 목표 설정과 전략에 대한 상담자의 견해*

상담목표, 계획 및 전략

슈퍼비전 받고 싶은 내용

[서식 22] 종사자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

## 근로계약서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이하 “사용자”라 함) 근로자 \_\_\_\_\_ 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① **근로계약기간** : 2022년 1월 1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

②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 ○○학대피해아동쉼터

단, 업무 및 근무장소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근무일 및 휴일**

- 근로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 : 근무표에 따라 야간 → 오후 → 탄력근무 순으로 근무
- 탄력근무는 2주이내 탄력근로제
- 근무표 및 근무일과 업무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은 아래와 같음

1) 근무유형에 따른 근무일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후근무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주간	휴무	휴일
야간근무	야간	야간	야간	야간	야간	휴무	휴일
탄력근무	주간	휴무	휴무	휴무	휴일	탄력근무	탄력근무

2)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구분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근무시간	비고
주간 근무	09:00	18:00	1시간 (12:00~12:30, 15:00~15:30)	8시간	
오후 근무	13:00	22:00	1시간 (18:00~19:00)	8시간	금요일 주간근무
야간 근무	19:00	익일 10:00	7.5시간 (23:00~06:00, 07:00~07:30)	7.5시간	야간보상 휴가0.5
탄력 근무	09:00	18:00	1시간 (12:00~12:30, 15:00~15:30)	8시간	월요일 주간 근무
		익일 09:00	8시간 (12:00~12:30, 23:00~06:00, 07:00~07:30)	16시간	탄력근무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일과 업무시작과 종료시각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상황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있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합니다. 근로자 \_\_\_\_\_ (인, 서명)

④ **휴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인정휴가는 취업규칙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⑤ **처우내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위(책) : 보육사(사원)
- 연봉 : 0000만원(월급여 + 수당, 내용 기재)
- 급여계산 : 월력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계산
- 지급방법 : 매월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근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 수습기간 : 3개월로 수습기간 중 처우 변경 없음.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 진행

⑥ 기타

- 학위, 경력 등 허위사실 기재시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함
- 근로계약 후 범죄경력조회에서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함
-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근로자는 법인의 아동안전보호정책 아동에 대한 약속,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위반시 규정에 따라 징계 받을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게시 될 수 있음

⑦ 이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름

2022. 01. 01.

사용자 주소 :  
 시설명 :  
 대표자 : (인)

근로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 학대피해아동심터 운영매뉴얼

[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공동연구진]

배화옥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아리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기획·편집 세이브더칠드런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전화 02. 6900. 4400

홈페이지 www.sc.or.kr



**Save the Children**

